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 분석 보고서

- 2025년 CBP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 분석 보고서

-2025년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서문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애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적용과 판단이 관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공급망 운영과 가격 결정, 계약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수출 물품이 어떤 HS/HTS Code로 분류되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어떤 국가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율 관세 또는 추가 관세의 적용 대상 국가로 판단되는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기업은 비특혜 원산지 판단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특혜 원산지는 단순한 서류 기재 항목을 넘어, 대미 수출의 비용·리스크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통관 체계에서 원산지, 품목분류 등과 관련한 사전심사(Advance Ruling)의 주된 결정 권한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19 C.F.R. Part 177(Administrative Ruling)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CBP가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등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결정문은 개별 사안의 결론뿐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 검토된 공정, 부품, 기능 요소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유사 물품에 대한 판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25년 CBP가 발행한 사전심사 결정문 중 비특혜 원산지 기준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보고서는 CBP 사전심사 제도 및 사전심사 결정문에 대한 통계적 현황을 제시하고, 2025년 실질적 변형 관련 결정문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과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관리상의 유의사항과 리스크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 차

Part.

01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체계 및 최근 동향 **9**

- 1. 사전심사 제도의 구조와 정보 공개 10
- 2. 사전심사 결정문 정량 통계 15

Part.

02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판정 사례 심층 분석 **23**

- 1.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24
- 2.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 상세 분석 32
 - 1) 개요
 - 2) 주요 판정 사례
 - ① 인쇄회로기판(PCBA) 중심 전기·전자 제품
 - ② 기계 및 자동차 부품
 - ③ 케이블, 전선류
 - ④ 정수·공기 필터
 - ⑤ 의약품
 - ⑥ 화장품
 - ⑦ 펄프, 종이 제품
 - ⑧ 플라스틱, 고무 성형 제품
 - ⑨ 수공구류
 - ⑩ 기타 개별 물품
- 3. 2025년 원산지 관련 사례 변경 사유와 시사점 65
- 4. 비특혜 원산지 의사결정 로드맵 71

Part.

03 유용한 사이트 **73**

- 1. 해외 사이트 74
- 2. 국내 사이트 86

Part.

04 참고자료 **89**



PART

I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체계 및 최근 동향

1. 사전심사 제도의 구조와 정보 공개
2. 사전심사 결정문 정량 통계

01 사전심사 제도의 구조와 정보 공개

■ 사전심사란?

-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C.F.R. Part 177 등 관련 규정에 따라 CBP의 규정 및 판정실(Regulations and Rulings, 이하 RR)이 발행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서면 결정

■ 사전심사 결정 부서

- 구속력을 갖춘 사전심사 결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RR 산하 각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
 - 국가품목전문가부(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이하 NCSD): 뉴욕에 위치하며, NCSD 담당 사전심사 번호는 NY로 시작(예: NY N123456)
 - RR 본부(Headquarters, 이하 HQ)*: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본부 담당 사전심사 번호는 HQ로 시작(예: HQ H123456)

* RR 본부에 속한 상업·무역원활화부(Commercial and Trade Facilitation Division) 및 국경보안·무역규정준수부(Border Security and Trade Compliance Division)에서 사전심사 담당

[사전심사 결정 부서]

RR	
NCSD(뉴욕)	HQ(워싱턴 D.C.)
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	NCSD 사전심사 종류 4가지 과세가격[FTA 역내부가가치비율(RVC) 포함]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선박 및 운송수단 제한 및 금지 물품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Marking)	지식재산권(수입금지명령 집행 포함) 관세 환급(Duty Drawback)
무역 프로그램 및 무역 협정의 적용 (Application of 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일시수입보세(TIB) 자유무역지역(FTZ) 보세창고
※ 단,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관련 사항 제외	수입물품 처리수수료(MPF) 정부조달(1979년 무역협정법 관련) 수입 및 관세 산정 절차

■ 신청방법

- 사전심사는 담당 부서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
 - NCSD: CBP e-Ruling 홈페이지(<http://erulings.cbp.gov>)를 통해 신청
 - RR 본부: 담당 부서에 서면 신청

■ 결정문의 공개

- CBP는 발급된 모든 사전심사 결정문을 온라인 검색 시스템인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결정문 번호 또는 물품명 등을 검색하여 유사 물품에 대한 참조 사례 조회 가능

* 주소: <https://rulings.cbp.gov/home>

19 C.F.R § 177.10(a) - Publication of deci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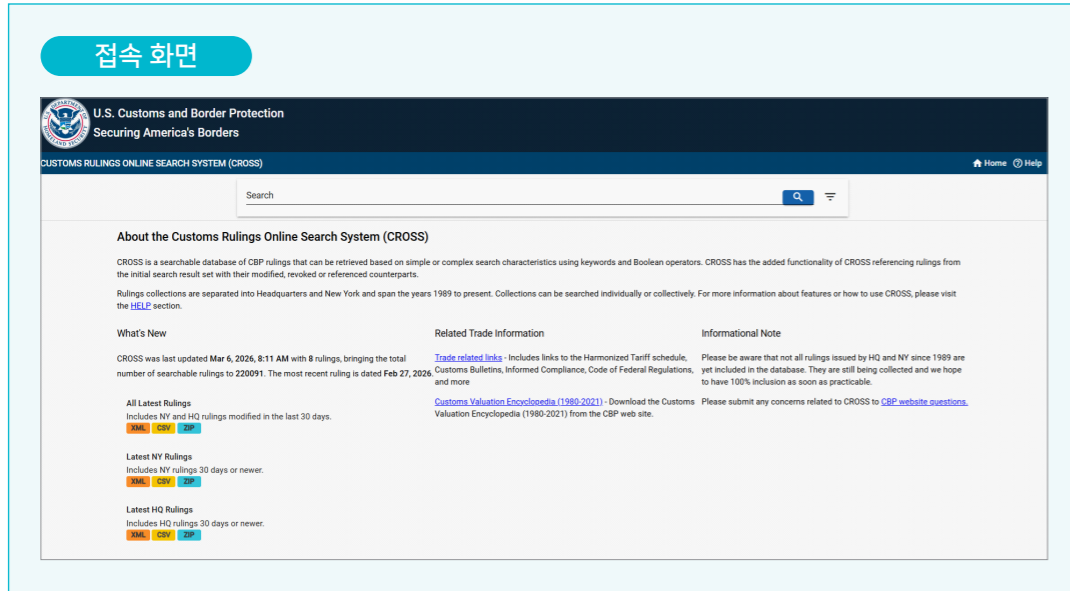
Within 90 days after issuing any interpretive decision under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relating to any Customs transaction (prospective, current, or completed), the Customs Service shall publish the decision in the Customs Bulletin or otherwise make 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interpretive decision includes any ruling letter, internal advice memorandum, or protest review decision. Disclosure is governed by 31 C.F.R. Part 1, 19 C.F.R. Part 103, and 19 C.F.R. § 177.8(a)(3).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및 그 개정법에 따라, 장래·현재·종결된 거래를 불문하고 어떠한 관세 거래와 관련하여 해석상 결정을 내린 경우, 관세당국은 그 결정을 발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Customs Bulletin」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말하는 “해석상 결정”에는 판정서(ruling letter), 내부 자문 의견서(internal advice memorandum), 또는 이의신청 재심 결정(protest review decision)이 포함된다. 공개 범위와 방식은 31 C.F.R. Part 1, 19 C.F.R. Part 103, 및 19 C.F.R. § 177.8(a)(3)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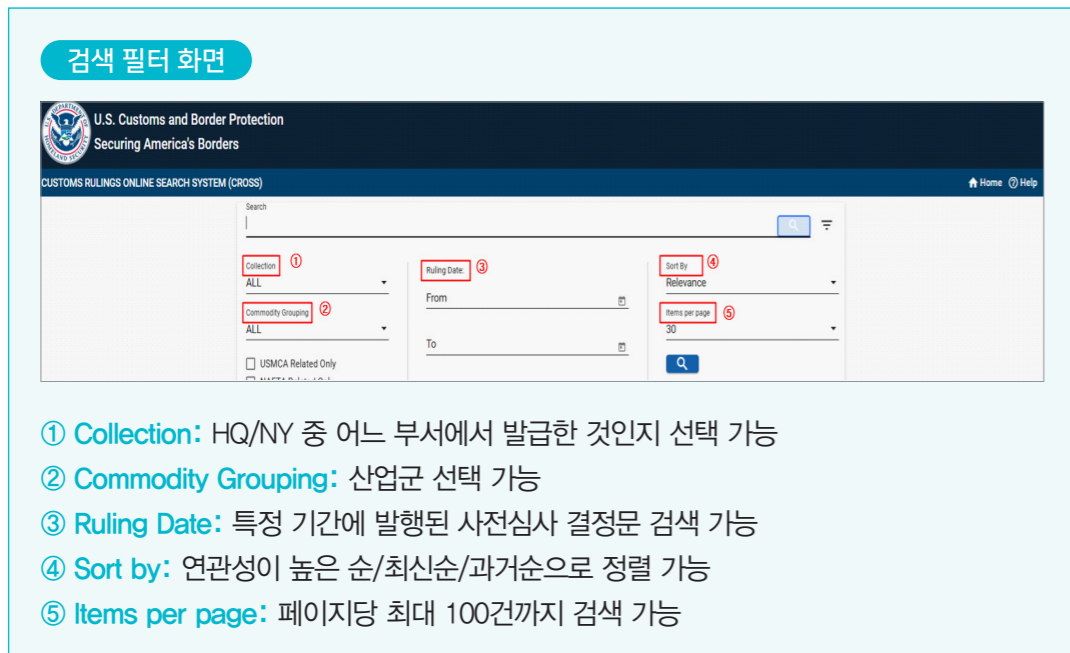
■ CBP CROSS 이용 방법

• 사이트 주소: <https://rulings.cbp.gov/home>

-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CBP CROSS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



- 검색 필터를 통해 원하는 부서, 날짜, 산업군 등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



- 특정 단어 검색 후 나타나는 검색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

검색 필터 화면

<검색 화면 설명>

- ① **날짜(DATE)**: 결정문이 발행된 날짜
- ② **결정 사안(CATEGORY)**: 해당 결정문이 다루는 사안의 유형(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과세가격 등) - 품목분류 결정문의 경우 분류에 따라 결정된 세번이 함께 기재됨
- ③ **결정 본문(RULING REFERENCE)**: 제목 클릭 시 결정문 본문 확인 가능
- ④ **관련 사항(RELATED)**: 결정에 인용된 기존 결정문이나 취소 혹은 정정 대상인 결정문 번호 나열

참고 - CBP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의 구조

HQ 사례를 기준으로 CBP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은 크게 ① FACTS, ② ISSUE, ③ LAW AND ANALYSIS, ④ HOLDING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NY 사례 또한 범주를 나누진 않으나 유사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1. 사실관계(FACTS)

-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사항들을 요약·제시
 - 물품의 제조공정
 - 성분
 - 용도
 - 원재료 원산지 등

2. 쟁점 사항(ISSUE)

- ◎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제시(ex,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여부 등)

3. 법률 분석(LAW AND ANALYSIS)

- ◎ 쟁점 사항에 대해 CBP가 조문, 법리, 판례 등을 논거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으로, CBP가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 ◎ 아래는 CBP가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 시 주로 활용하는 법령, 판례 및 판정임
 - 관련 법령
 - 19 U.S.C. § 130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 19 C.F.R Part 134 (원산지표시)
 - 19 C.F.R. Part 102 (USMCA,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등
 - 관련 주요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 관련 주요 판정
 - HQ H301619
 - HQ W968434 등

4. 결론(HO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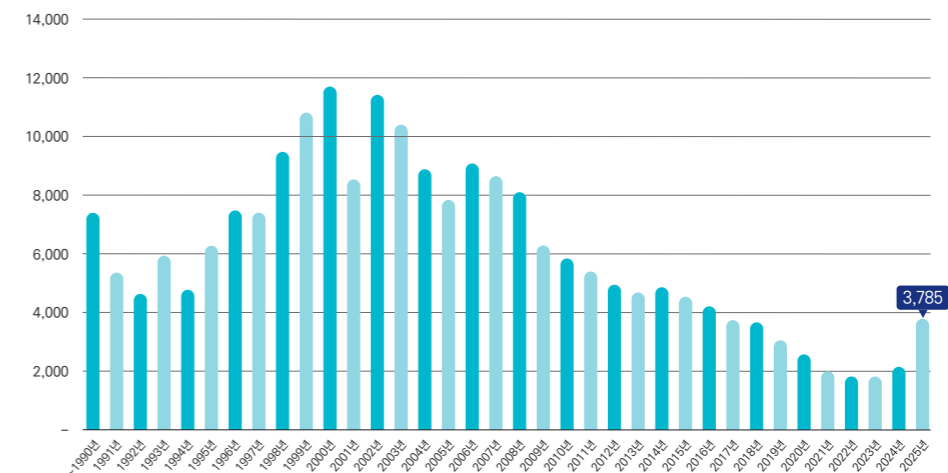
- ◎ 해당 사안에 대한 CBP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신청 내용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로 판단되었는지,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등을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음

02 사전심사 결정문 정량 통계

■ CBP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

- 데이터 범위: CBP CROSS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한 사전심사 결정문을 기초로, 1966년 ~2025년까지 총 219,604건¹⁾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 분석 결과
 - (연도별 발행 건수) 연도별 사전심사 결정문 발행 건수는 2000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0년 총 11,746건으로 가장 많은 결정문을 발행. 이후 2023년 1,835건으로 최저를 기록할 때 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5년 3,7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76%의 상승률을 기록

<연도별 전체 사전심사 결정문 발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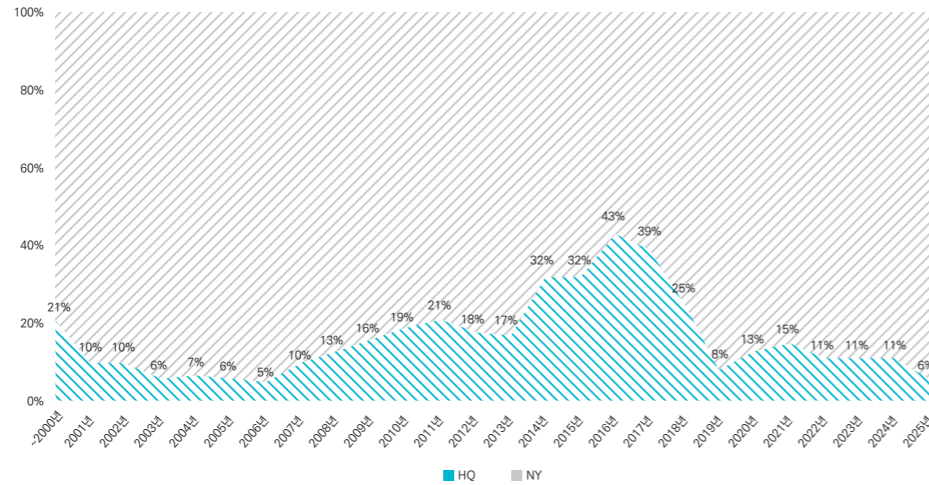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7,373	5,358	4,656	5,915	4,783	6,242	7,477	7,359	9,494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808	11,746	8,514	11,461	10,468	8,907	7,818	9,129	8,665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074	6,278	5,825	5,427	4,935	4,642	4,873	4,540	4,204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765	3,676	3,039	2,578	1,952	1,849	1,835	2,154	3,785

1) 통계 분석 결과는 CBP CROSS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사전심사 결정문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크롤링하여 수집한 RAW DATA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 크롤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추가 업데이트 자료 유무 등의 이유로 실제 수 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HQ/NY 비중) 연도별 전체 발행된 사전심사 결정문 중 HQ가 발행한 사전심사 결정문의 비중은 1966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21%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하여 2025년 기준 6%를 기록

<연도별 HQ/NY 결정문 비중>



- (결정 사안) 1966~2025년 CBP CROSS CATEGORY를 기준으로 단어 빈도 분석 결과, CBP 사전심사 결정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안은 품목분류였으며, 뒤를 이어 운송, 표시, 원산지관련 사안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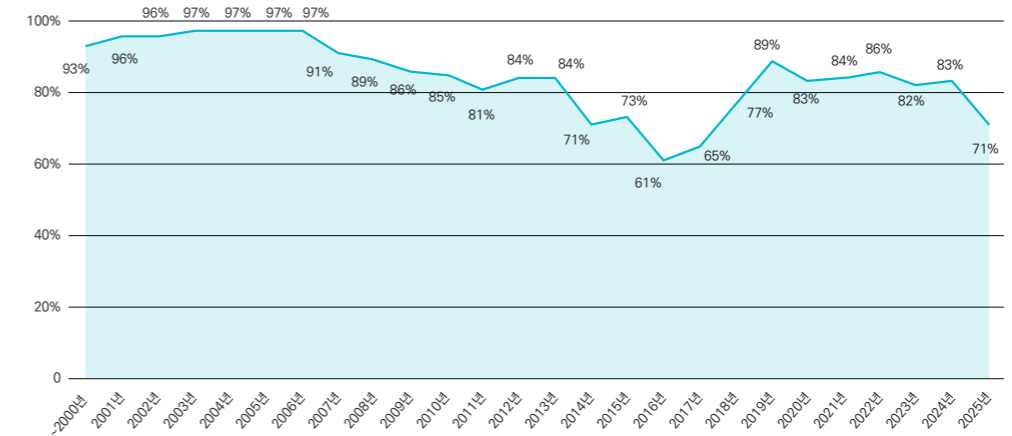
<결정 사안 단어 빈도 분석>



주1: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RAW DATA가 공백으로 되어있어 etc.라고 입력한 것은 제외
 주2: 하나의 결정문에 복수의 사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어 합계는 219,604건을 초과

- (연도별 품목분류 비중) 연도별 총 사전심사 결정문 중 품목분류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결정문 비중은 1966~2000년까지 평균 93%의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2025년에는 71%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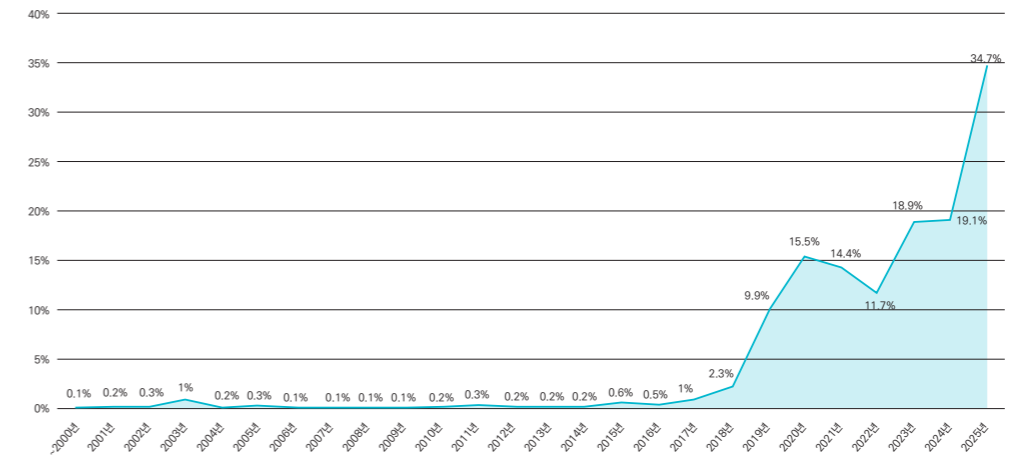
<연도별 사전심사 결정문에서 품목분류가 차지하는 비중>



주: 연도별 품목분류 결정문 수(다른 사안과 복수 결정 건 포함) / 연도별 전체 결정문 수

- (연도별 원산지 비중) 반면, 원산지 결정 건에 대해서는 2010년 중반까지 1% 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이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약 35%를 기록함

<연도별 사전심사 결정문에서 원산지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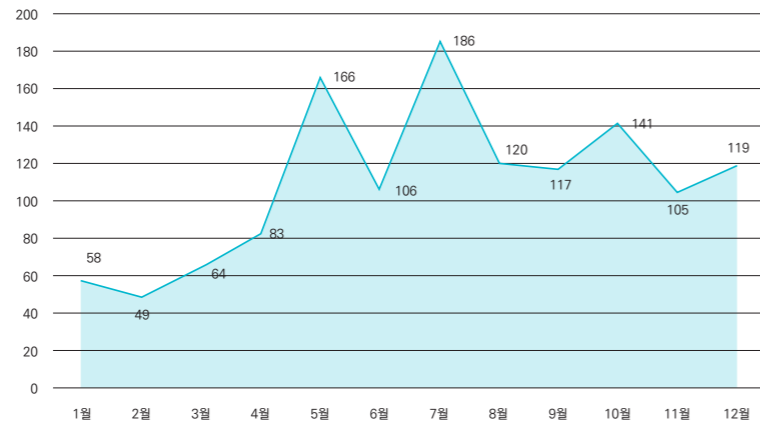


주: 연도별 원산지 결정문 수(다른 사안과 복수 신청 건 포함) / 연도별 전체 결정문 수

■ 2025년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

- (월별 건수) 2025년 CBP CROSS에 공시된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은 CATEGORY를 기준으로 총 1,314건²⁾이며,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5년 월별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 발행 수>



- (HQ/NY 비율) 2025년 CBP가 발행한 1,314건의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중 HQ 발행 건수는 5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260건의 사전심사는 NY에서 발행함

<2025년 HQ/NY 발행 결정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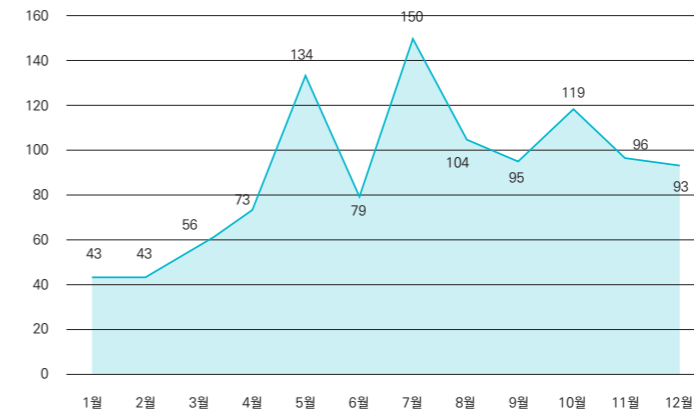


2) FTA 특혜, 섬유 및 의류 원산지 판정, 실질적 변형 판정 등과 같은 특혜, 비특혜 원산지가 모두 포함된 수치

■ 2025년 실질적 변형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

- (월별 건수) 총 1,314건의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중 실질적 변형 기준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수는 총 1,085건으로 전체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 수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전체 원산지 결정문 수의 대략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월별 실질적 변형 관련 결정문 발행 수>



- (공급망 참여국 및 최종 수출국) 실질적 변형 관련 1,085건 중 사례별 공급망 참여국과 최종 수출국 파악을 위해 단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급망 참여국: 1,085건 중 중국이 공급망에 참여한 경우가 900건으로 1위 기록
- 최종 수출국: 1,085건 중 중국이 최종 수출국인 경우가 424건으로 1위 기록

[주요 공급망 참여국 및 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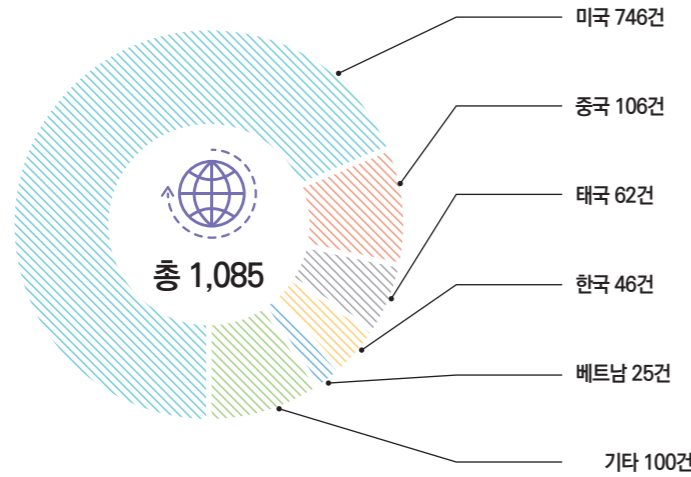
공급망 참여국*		최종 수출국**	
중국	900	중국	424
베트남	290	태국	169
태국	242	베트남	141
미국	230	인도	108
인도	152	한국	45
한국	120	캄보디아	36
대만	98	말레이시아	35
말레이시아	90	대만	19
인도네시아	69	멕시코	19
캄보디아	56	인도네시아	18

* 각 결정문에서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를 공급하거나 특정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 미국으로의 최종 수출이 이루어진 국가

- **(주요 신청국)** 사전심사 결정문에서 파악 가능한 신청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관련 사전심사를 주로 신청하는 국가 순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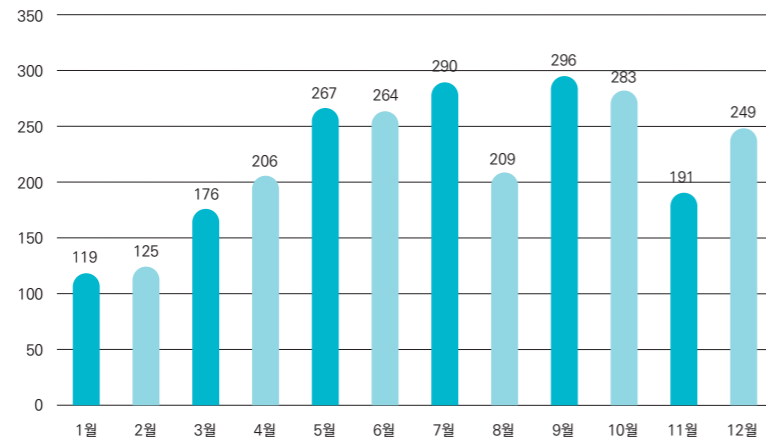
<주요 신청 국가>



■ 2025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

- **(월별 건수)** 2025년 품목분류 사안이 포함된 사전심사 결정문 수는 총 2,675건이며, 월별 발행 수는 아래와 같음

<2025년 월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 발행 수>



- **(주요 품목)** 2025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에서 다뤄진 주요 품목의 HS Code를 4자리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제9505호(축제·오락용품) 물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제3926호(플라스틱 기타 제품), 제9403호(기타 가구와 부분품), 제3004호(소매 의약품)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25년 품목분류 결정문 주요 품목]

순위	HS Code	개수	순위	HS Code	개수
1	9505	188	11	7326	40
2	3926	131	12	8421	39
3	9403	74	13	8479	38
4	3004	66	14	3824	37
5	4202	57	15	8518	36
6	6307	53	16	9018	36
7	8708	53	17	7318	31
8	8543	48	18	6404	30
9	9503	47	19	9404	30
10	4911	40	20	9027	28

PART

II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판정 사례 심층분석

1.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2.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 상세 분석

1) 개요

2) 주요 판정 사례

- ① 인쇄회로기판(PCBA) 중심 전기·전자 제품
- ② 기계 및 자동차 부품
- ③ 케이블, 전선류
- ④ 정수·공기 필터
- ⑤ 의약품
- ⑥ 화장품
- ⑦ 펄프, 종이 제품
- ⑧ 플라스틱, 고무 성형 제품
- ⑨ 수공구류
- ⑩ 기타 개별 물품

3. 2025년 원산지 관련 사례 변경 사유와 시사점

4. 비특혜 원산지 의사결정 로드맵

01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 미국의 원산지 제도 개요

- 미국의 원산지 제도는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되며, 각각 그 목적과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다름
 - 특혜 원산지: FTA 또는 특정 특혜 관세 제도하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
 - 비특혜 원산지: 수입통관, 원산지표시, 무역구제조치 적용 등의 통상 목적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 제도 비교]

구분	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목적	FTA 또는 특혜 관세 제도에 따라 관세 상 혜택 부여	통관, 원산지표시, 무역구제조치, 제301조 조치 등 통상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
판단 기준	세번변경, 역내가치비율, 가공공정 등 협정 또는 제도별 일정 기준 적용	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
주요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USMCA 등 자유무역협정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Trade Act of 1974, Title V/19 U.S.C. § 2461) 등 특혜 관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19 U.S.C. § 1304) • USMCA 물품 원산지표시(19 C.F.R. Part 102) • 정부조달물품(19 U.S.C. §§ 2511-2518) 등

■ 수입물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

-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및 기타 정책 목적상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국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판정
- 수입물품에 대해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정의하는 개별 미국 법령은 아래와 같음

[수입물품 유형별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구분	법령	구분	법령
일반 수입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U.S.C. § 1304 • 19 C.F.R. § 134.1 	USMCA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Part 102
섬유 및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U.S.C. § 3592 • 19 C.F.R. § 102.21 	정부조달용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U.S.C. §§ 2511-2518 • 19 C.F.R. Part 177 Subpart B

- 이중, 미국이 관세 정책 집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19 C.F.R. § 134.1 규정이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될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함

19 C.F.R. § 134.1(B)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however, for a good of a NAFTA or USMCA country, the marking rules set forth in part 102 of this chap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 102 Rules) will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원산지란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가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물품에 추가로 작업 또는 재료가 더해질 경우, 그러한 다른 국가를 이 규정의 의미에서 원산지로 간주하려면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NAFTA 또는 USMCA 국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본 장 제102부(이하 "Part 102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기관

-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은 주로 CBP에 의해 이루어지며, CBP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에 제소해야 함
- 수출입 거래 종사자는 미국 수입 전에 취급 물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CBP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원산지에 대한 사전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FTA 특혜 적용을 위해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과 같이 명확한 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실질적 변형의 역사 및 법적 근거

- 법령상 실질적 변형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단순히 실질적 변형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

- 실질적 변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것은 *Anheuser-Busch Brewing Ass'n(1908)*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Gibson-Thomsen Co.(1940)* 사건 등에 의해 위 *Anheuser-Busch Brewing Ass'n(1908)* 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계승되어 옴

Anheuser-Busch Brewing Ass'n 사건(1908)

- ◆ **개요:** 원고가 스페인으로부터 코르크를 수입하여 세척, 증기 처리 등을 통해 코르크 마개를 제작한 뒤, 코르크 마개가 삽입된 맥주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관세 환급을 청구
- ◆ **쟁점:** 코르크 마개가 맥주의 “제조”(manufacture)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판단:**
 - 코르크가 미국 내 여러 공정을 거쳤다는 것은 인정되나, 법적인 의미에 “제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고유한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갖춘 새롭고 다른 물품으로 변형(transformation)되어야 함
 - 해당 코르크 마개는 미국 내 공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코르크일 뿐이고 새로운 물품으로 변한 것은 아니며, 맥주의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Gibson-Thomsen Co. 사건(1940)

- ◆ **개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목재 블록 및 칫솔 손잡이에 구멍을 뚫고 강모를 삽입한 다음 강모 절단 및 정리, 목재 부분 연마, 각인 등의 작업을 거쳐 헤어 브러시와 칫솔 생산
- ◆ **쟁점:** 일본에서 수입된 목재 부품이 미국 내 가공을 거친 후 미국산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수입 당시 물품은 “brush block”, “toothbrush handle”이라는 부품이었고, 미국 내 공정을 거친 후에는 “hair brush”, “toothbrush”라는 완성품으로 명칭이 변화함
 - **(특성의 변화)** 수입 당시 물품은 강모가 없고 기능상 미완성 상태의 부품에 불과했으며, 미국 내 공정을 거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헤어 브러시와 칫솔이라는 물품의 일부로 흡수되었음
 - **(용도의 변화)** 수입 당시 물품은 완성 브러시와 칫솔의 부품이라는 용도가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완성 제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미국에서 공정을 거친 후에만 소비자용 제품으로서 그 사용 가치를 갖게 됨
 - **(기타 사항)** 부가가치 및 비용 측면에서 일본산 목재 블록 및 칫솔이 최종 제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에 불과하며,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공정이 대부분의 가치를 차지함
 - **(최종 판결)** 일본산 부품은 미국 내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미국산 제품이 됨

■ 실질적 변형 판정의 기본 원칙

- 실질적 변형: 해당 물품의 고유한 명칭(name), 특성(character) 및 용도(use)가 변화하여 새롭고 상이한 물품으로 변형되었는지를 의미
- 법령상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판례를 통해 형성된 논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음
 - (a) 재료로부터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 발생 여부
 - (b) 최종제품의 제조공정,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공정 및 이러한 제조공정의 국가 간 비교
 - (c) 최종제품 제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및 이러한 부가가치의 국가 간 비교
 - (d) 기타 고려 요소

참고

- 1. 명칭(Name)의 변화**
 - 명칭의 변화는 명칭, 특성 및 용도 중 가장 설득력이 낮은 요소로 여겨짐
 - 통상 명칭의 변화만을 근거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2. 특성(Character)의 변화**
 - 특성이란 통상 개체를 형성하고 다른 것과 구별 가능하게 하는 구조, 형태, 원재료 또는 기능 등과 관련한 본질적 요소를 의미
 -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품이 가진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3. 용도(Use)의 변화**
 - 수입 시점에서 예정된 물품의 용도와 수입 후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용도 사이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수입 시 예정되어 있던 용도와 수입 후 공정이 완료된 후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하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 4. 제조·가공 공정의 성격**
 - 수입 후의 제조·가공이 “복잡한 공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정”인지 여부
 - 공정의 복잡성 판단에는 작업시간, 노동자의 숙련도, 공정 단계, 공정 수준, 공정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5. 비용 및 부가가치**
 - 최종제품 및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및 비용의 비교
 - 다만, 부가가치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할 만한 최소 수준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변형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활용
- 6. 기타 고려 요소**
 - 세번변경 여부, 소프트웨어의 가치,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포함된 자원 등 사안 및 품목별로 총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여러 증거들을 검토

법원의 실질적 변형 관련 판례

- 법원의 판례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를 명칭, 특성, 용도 및 기타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Uniroyal Inc. 사건(1982년)

- ◆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밀창을 제외한 완성된 형태의 갑피를 미국으로 수입한 뒤 밀창을 갑피에 부착하여 신발 생산
- ◆ **쟁점:** 19 U.S.C. § 1304(a)에 따라 갑피가 인도네시아산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하는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갑피라는 수입 물품이 신발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형되기는 하나, 명칭의 변화는 특성 및 용도 변화에 비해 비교적 설득력이 약한 증거임
 - **(특성의 변화)** 완성된 신발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수입된 갑피이며, 갑피는 미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완성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밀창을 부착하여도 그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음
 - **(용도의 변화)** 갑피는 미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용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미국 내 공정을 거친 후에도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음
 - **(기타 사항)** 제조공정의 복잡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가죽 재단, 두께 가공, 봉제 등 적어도 5개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반면, 미국에서 수행된 고도의 공정은 약간의 봉제뿐임
 - **(최종 판결)** 갑피는 미국 내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제품에 인도네시아를 표시해야 함

Belcrest Linens 사건(1984년)

- ◆ **개요:** 중국에서 직조된 면직물을 홍콩으로 수입하여 절단, 자수, 스텝 처리, 봉제, 다림질 등의 공정을 거쳐 베개 커버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1951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 Extensions Act of 1951)에 따라 홍콩산 물품에는 3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산 물품에는 9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바, 홍콩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베개 커버의 원산지를 홍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중국에서 생산된 직조 원단은 홍콩에서 공정을 통해 베개 커버로 그 명칭이 변형됨
 - **(특성의 변화)** 완성된 베개 커버는 직조 원단과 비교해 외관, 정체성, 기능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물품임
 - **(용도의 변화)** 원단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소재이지만, 베개 커버는 특정한 용도를 가지는 상업적 상품이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 **(기타 사항)** 홍콩에서의 공정은 단순 포장이나 경미한 손질이 아닌 절단, 장식, 봉제, 완제품화 등의 연속된 단계로 구성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보다 더 복잡함
 - **(최종 판결)** 중국산 직조 원단은 홍콩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됐으므로, 원산지는 홍콩임

Ferrostaal Metals Corp. 사건(1987년)

- ◆ **개요:** 일본산 냉간압연 강판을 뉴질랜드에서 연속 용융 아연도금(continuous hot-dip galvaniz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어닐링 및 아연도금 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공정으로 인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명칭의 변화는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중 가장 설득력이 낮은 요소이나, 가공 전 물품의 명칭은 "full hard cold rolled steel sheet"이고 가공 후 물품의 명칭은 "continuous hot-dip galvanized steel sheet" 이므로 명칭에 변화가 발생함
 - **(특성의 변화)** 어닐링을 통해 강판의 고유 속성인 강도와 연성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도금 공정을 통해 강판의 화학적 조성이 변화하고 내식성이 부여되므로, 특성의 변화가 발생함
 - **(용도의 변화)** 건설 및 자동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본산 냉간압연 강판과 뉴질랜드에서의 공정 이후 탄생한 제품의 용도가 상이하며, 두 개의 제품은 상호대체적이지 않으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 **(기타 사항)** 일본산 제품은 톤당 350달러에 판매되는 반면 뉴질랜드에의 공정을 거친 제품은 톤당 550~630달러에 판매되고 두 제품의 품목분류 또한 상이함
 - **(최종 판결)** 일본산 냉간압연 강판은 뉴질랜드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됐으므로, 원산지는 뉴질랜드임

Superior Wire 사건(1989년)

- ◆ **개요:** 스페인산 선재(wire rod)를 캐나다로 수입하여 인발 공정을 통해 강선(steel wire)으로 가공한 뒤, 콘크리트 보강용 메시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
- ◆ **쟁점:** 미국으로 수입된 강선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스페인산 선재는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강선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
 - **(특성의 변화)** 캐나다에서 수행된 인발 공정으로 인해 제품의 외형이나 강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시각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강선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은 이미 스페인에서 선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확립됨
 - **(용도의 변화)** 관련 업계에서 선재와 강선을 다르게 보긴 하지만, 강선의 최종 용도는 캐나다에서 수행된 인발 공정이 아닌 스페인에서의 선재 생산 공정에서 상당 부분 결정됨
 - **(기타 사항)** 캐나다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생산자용 제품에서 소비자용 제품으로의 변형이 없다는 점, 가공이 단순하다는 점, 부가가치가 작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
 - **(최종 판결)** 스페인산 선재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스페인임

National Hand Tool 사건(1993년)

- ◆ **개요:** 대만에서 냉간성형 또는 열간단조된 공구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열처리 및 전기도금 가공을 한 후 최종 조립하여 플렉스 소켓, 스피더 핸들 및 플렉스 핸들 생산
- ◆ **쟁점:** 19 U.S.C. § 1304(a)에 따라 완성된 공구의 원산지를 대만이라고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미국으로 수입된 여러 부품들은 플렉스 소켓, 스피더 핸들 및 플렉스 핸들이라는 공구로 명칭이 변화하지만 이 요소가 핵심적인 것은 아님
 - **(특성의 변화)** 대만에서 생산된 부품들은 미국으로 수입 전에 이미 최종 형태로 성형 또는 단조되었고 미국에서의 일부 열처리, 세척, 전기도금, 조립 등의 공정은 수입된 부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꾸지 못함
 - **(용도의 변화)** 각 부품들은 이미 처음부터 플렉스 소켓, 스피더 핸들 및 플렉스 핸들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져 그 용도가 사전에 정해졌으며, 미국에서 조립되어 완제품 공구가 되더라도 그것이 전혀 새로운 용도를 창출한 것은 아님
 - **(기타 사항)** 원고는 수입 부품 가격 대비 완제품의 판매 가격 차이를 근거로 미국 내 공정을 통해 일정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공정이 단순 조립이 아닌 실질적 제조에 가깝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가격 상승이나 부가가치 자체는 실질적 변형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아님을 밝힘
 - **(최종 판결)** 대만산 공구 부품은 미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대만임

Ran-Paige Co., Inc. 사건(1996년)

- ◆ **개요:** 중국산 냄비, 뚜껑, 손잡이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부품 결합, 고정, 세척 등의 공정을 수행한 뒤, 미국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 공급
- ◆ **쟁점:** 1979년 무역 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수입된 중국산 구성품은 미국에서 결합 이후에도 여전히 냄비, 뚜껑, 손잡이로 불리므로 명칭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특성의 변화)** 음식을 담고, 냄비를 덮는 등 중국에서 생산된 구성품이 가지고 있던 기능은 미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음
 - **(용도의 변화)** 중국산 구성품은 수입 시점에 이미 예정된 최종 용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변화되지 않음
 - **(최종 판결)** 중국산 구성품은 미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Uniden America Corp. 사건(2000년)

- ◆ **개요:** 중국산 AC 어댑터를 포함한 275가지의 여러 국가산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한 뒤 베이스, 핸드셋 및 AC 어댑터로 구성된 무선 전화기 생산
- ◆ **쟁점:** GSP 적용을 위해 수혜국인 필리핀산으로 원산지를 판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AC 어댑터를 포함한 275개 이상의 부품은 필리핀에서의 공정을 통해 무선 전화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화함
 - **(특성의 변화)** 특성이란 “구조, 형태, 재질 또는 기능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서, 이들이 결합하여 통상 해당 개체를 구성하고 구별하게 하는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무선 전화기는 그 구성 부품 각각과는 분리되고 구별되는 성질과 정체성을 가지므로 특성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용도의 변화)** 각 부품의 용도는 무선 전화기의 용도와 다르며, 특히 AC 어댑터의 용도는 전원 공급이고 완성된 무선 전화기의 용도는 전화 통신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기타 사항)**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단순한 노동 집약적 작업이 아니며, 특히 11단계에 걸친 제조과정, PCBA 생산 등에 사용된 공정은 특정한 직업 훈련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함
 - **(최종 판결)** 중국산 AC 어댑터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275가지 부품은 필리핀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원산지는 필리핀임

Energizer Battery Inc. 사건(2016년)

- ◆ **개요:** 일부 조립된 상태의 렌즈 헤드 서브 어셈블리를 포함한 약 50개 정도의 부품(LED와 hydrogen getter)을 제외한 대부분은 중국산을 미국으로 수입한 뒤, 최종 조립 및 결합 등의 공정을 거쳐 군용 손전등 생산
- ◆ **쟁점:** 1979년 무역 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를 검토
- ◆ **판단:**
 - **(명칭의 변화)** LED, 렌즈, 스위치 레버 등의 구성품들은 미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부품명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명칭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특성의 변화)** 미국 내 조립 공정은 수입 부품의 어떠한 형상이나 재질, 성분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50개 부품 중 40%가 스크류, 너트, 와셔 등에 해당하며, 조립 후에도 특성이 바뀌어 새로운 물품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집합체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용도의 변화)** 각 부품들은 수입 시점에 이미 예정된 최종 용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전선 또한 손전등 조립에 맞게 미리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사항)** 미국 내 공정의 복잡성, 공정 시간, 부품 수, 훈련 수준, 비용 등의 관점에서 모두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최종 판결)** 중국산 부품들은 미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02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 상세 분석

1) 개요

- 법원은 판례를 통해 실질적 변형은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총체적 상황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그러나 CBP는 일부 결정문에서 실무적인 해석상,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가 아닌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하는 핵심 구성요소(Essential Component)를 중심으로 판정하는 경향을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2025년 CBP가 판정한 실질적 변형 관련 1,085건의 결정문 중 핵심 구성요소에 의한 판정 경향이 강한 10대 품목군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함
 - (선정 기준) 1,085건의 결정문 중 해당 품목군에 대해 유사한 핵심 구성요소 판단 논리를 보이는 품목으로 구성
 - (유형) CBP의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정문을 검토했을 때 크게 ① 총체적 상황 판단형과 ② 핵심 구성요소 판단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제조공정, 부가가치 등을 기초로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를 총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	▶	구체적 기준 X
②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부품, 공정 혹은 기타 이유(ex, 의학적 이점, 편리성 증대 등)를 기초로 판단	▶	구체적 기준 O

〈유형화 자료 해석 주의 사항〉

- 10대 품목 선정은 2025년 CBP가 발행한 사전심사 결정문 중 CBP가 특정 물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 판정 시 **비교적 일관적으로** 특정 핵심 구성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한 것임
- 동일 품목이라 할지라도 국가별 공정의 성격, 부가가치 비중, 투입 노동력의 차이, 최종제품의 용도 및 기능 등 총체적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실무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함**
- 본 자료는 CBP의 실질적 변형 판정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음

〈핵심 구성요소 판단에 대한 CIT의 입장〉

- Cyber Power Systems Inc. 사건에서 CIT는 실질적 변형 판단에 있어 핵심 또는 본질적 구성요소만을 중심으로 보는 “essence-based approach”와 부품별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component-by-component approach”를 대안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명칭·특성·용도 변화에 관한 총체적 증거 평가가 기본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 핵심 구성요소가 참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형 판단을 그 자체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음
- 따라서 CBP가 형식상 핵심 구성요소 중심의 논리를 자주 활용하더라도, 해석론상으로는 이를 독립된 법리로 보기도는 **총체적 상황 판단 원칙 아래에서 해당 사안을 설명하는 실무적 판단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2025년 CBP의 실질적 변형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중 특정 핵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판정한 10대 품목군은 아래와 같음

[판정 기준 요약표]

분류 및 물품		핵심 구성요소
① 인쇄회로기판(PCBA) 중심 전기·전자 제품		PCBA
② 기계 및 자동차 부품	볼 베어링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에어백 시스템	에어백 쿠션
	컨트롤 암	볼 조인트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
	워터 펌프	임펠러
	밸브	밸브 본체
③ 케이블, 전선류		도체/코어
④ 정수·공기 필터		필터 매체
⑤ 의약품		API or 혼합+의학적 이점
⑥ 화장품		원료 계량, 혼합 등을 통해 벌크 혼합물 생산
⑦ 펄프, 종이 제품	일반 종이 제품	원지
	성형 종이 제품	최종 형태 성형
	세정용 종이 제품	세정 용액
⑧ 플라스틱, 고무 성형 제품		최종 형태 성형
⑨ 수공구류		최종 형태의 블랭크
⑩ 기타 개별 물품	주얼리	주물 주소
	손목시계	무브먼트
	테이블	상판
	래칫 타이 다운	스트랩
	수도꼭지	밸브
	양초	Pouring 공정
	집적회로	프런트 엔드 공정
	인형	재단/봉제
	생선 필레	필레 작업
	자전거	프레임
	태양광 패널	셀
	낚시대	로드 블랭크
소형 드론	모터	

2) 주요 판정 사례

① 인쇄회로기판(PCBA) 중심 전기·전자 제품


판정 기준:

- CBP는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이하 PCBA)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 PCBA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PCBA 생산을 위해 표면실장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이하 SMT) 등을 활용하여 수많은 전자 부품을 결합하는 공정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된 PCBA가 최종제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다만, CBP가 기존에 PCBA를 핵심 요소로 판단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가별 수행되는 공정, 발생하는 부가가치, 다른 구성요소의 추가, 최종제품의 용도 변화 등에 따라 상이한 판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PCBA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음
 1. PCBA가 핵심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
 2. PCBA가 핵심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조명기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LED 램프	
사례번호	NY N347800(2025.05.08.)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5899(2025.03.06.), NY N345862(2025.03.11.), NY N346168(2025.03.17.), NY N348066(2025.05.08.), NY N347800(2025.05.08.), NY N350325(2025.06.24.), NY N350433(2025.06.25.), NY N350085(2025.07.08.), NY N350883(2025.07.17.), NY N350710(2025.07.21.), NY N351122(2025.08.01.), NY N351143(2025.08.04.), NY N353302(2025.10.03.), NY N354016(2025.10.16.), NY N355502(2025.11.17.), NY N356144(2025.12.08.)	
제조공정	<p>[베트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부품을 원재료로 하여 SMT 공정을 통해 PCBA(광원) 생산 - SMT 공정은 집적회로, 커패시터, 저항기, 퓨즈, 다이오드 등을 실장하는 것을 포함 - PCBA를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수입한 PCBA를 중국에서 중국산 하우징, 렌즈, 전선, 플레이트, 기타 부품들과 결합하여 LED 조명 완성 	
판정 사유 및 결과	LED 조명의 핵심 기능은 광원인 PCBA에 있고 베트남에서 생산된 PCBA는 중국에 수입될 당시 이미 예정된 최종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후속 공정을 거친 후에도 그 용도에 변화가 없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PCBA 생산국인 베트남임	
핵심 요소	PCBA	


충전기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배터리 충전기	
사례번호	NY N350383(2025.07.0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058(2025.04.08.), NY N352190(2025.08.22.), NY N352306(2025.08.22.), NY N353082(2025.09.10.), NY N353830(2025.10.01.)	
제조공정	<p>[인도네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가산 부품으로 PCBA 제조 - 집적회로, 저항기,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등을 솔더링, SMT 공정 등을 통해 PCB에 부착 - 완성된 PCBA를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넥터, 하우징 등 기타 부품을 부착하여 완성 	
판정 사유 및 결과	해당 PCBA는 입력 전압을 변환하고 대상 기계의 전기적 충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완성 장치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후속 공정은 PCBA를 새롭고 상이한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핵심 요소	PCBA	


노트북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노트북	
사례번호	NY N346570(2025.03.18.)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9899(2025.07.01.), NY N350187(2025.07.03.), NY N351649(2025.08.14.), NY N351763(2025.08.14.), NY N357057(2025.12.23.)	
제조공정	<p>[베트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회로,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으로 마더보드 PCBA 제작 - 베트남산 및 말레이시아산 프로세서, 대만산 또는 한국산 메모리, 대만산 SSD와 결합하여 마더보드 서브 어셈블리 생산 - 기능시험 - 마더보드 서브 어셈블리를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LCD 디스플레이, 팬, 키보드, 카메라, 터치패드, 안테나 등의 부품 및 각종 서브 어셈블리와 결합하여 최종제품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마더보드 PCBA는 조립체 내에서 프로세서 CPU와 메모리의 상호연결을 수용하고 제어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asic Input/Output System, 이하 BIOS)을 포함하는 구성품이므로 최종제품의 기능을 확립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PCBA를 새롭고 상이한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핵심 요소	PCBA	


 컨트롤러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무선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사례번호	NY N349996(2025.07.01.)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5016(2025.01.15.), NY N348231(2025.05.02.), NY N347753(2025.05.02.), NY N350654(2025.07.18.), NY N355069(2025.11.06.), NY N355986(2025.12.10.)	
제조과정	<p>[베트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 또는 이중 직렬 패키지(Dual In-line Package, 이하 DIP)를 사용하여 PCBAs 생산 - 펌웨어 다운로드 - 회로, 기능 시험 및 조립 - 생산된 PCBAs를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As, 하우징 및 기타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다수의 개별 부품을 PCB에 배치하고 납땜하는 것은 복잡한 공정으로 최종제품의 기능을 형성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베트남산 PCBA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핵심 요소	PCBA	


 오디오 기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례번호	NY N356637(2025.12.17.)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9869(2025.06.13.), NY N354778(2025.10.24.), NY N350800(2025.07.10.), NY N350967(2025.07.24.), NY N350799(2025.07.10.), NY N350937(2025.07.24.), NY N351861(2025.08.14.)	
제조과정	<p>[말레이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PCBA 제조 및 프로그래밍 - 메인 PCBA를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amp PCBA와 Front Panel PCBA 제조 - 중국에서 3개의 PCBA를 기타 부품, 하우징과 조립하고 검사 및 포장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디지털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메인 PCBA가 완성 장치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Preamp 및 Front Panel PCBA를 제조하고 모든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은 말레이시아산 메인 PCBA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	
핵심 요소	PCBA	

 모니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모니터	
사례번호	NY N349107(2025.06.11.)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8702(2025.05.22.), NY N349992(2025.07.03.), NY N355930(2025.12.03.)	
제조과정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모듈 생산 - 태국으로 LCD 모듈 수출 <p>[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를 활용해 280개의 전자 부품을 PCB에 결합하여 메인 PCBA 생산 - 모니터용 PCBA, 전원 공급용 PCBA, 키보드용 PCBA 생산 - VGA/HDMI 및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추가 부품을 부착 - 최종제품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메인 PCBA는 모니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여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므로, 원산지는 메인 PCBA를 생산한 태국임	
핵심 요소	PCBA	

 키보드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키보드	
사례번호	NY N356462(2025.12.12.)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3885(2025.10.15.)	
제조과정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A를 제외한 기타 부품 제조 - 부품을 대만으로 수출 <p>[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 공정을 통해 개별 전자 부품으로 PCBA 생산 - 펌웨어 추가 및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SMT 공정을 통해 PCBA가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이며, 대만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중국산 부품들을 키보드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므로, 원산지는 대만임	
핵심 요소	PCBA	

유의사항

- 전기·전자 제품이라 할지라도 PCBA가 항상 원산지 판단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님
- PCBA가 사용되더라도 최종제품의 용도나 기능이 PCBA가 아닌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전히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여야 함
- 참고 사례
 - 1) PCBA만으로 최종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후속 결합을 통해 완전한 기능이 형성되는 경우

제품	워터젯 절단기
사례번호	NY N347800(2025.05.08.)
제조공정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및 UI PCBA 제작 - 펌웨어, 소프트웨어 탑재 및 PCBAs 검사 - PCBAs를 중국으로 수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터젯 절단기를 이루는 대부분의 핵심 기계 부품(프레임, 갠트리, 펌프 등) 생산 - 핵심 기계 부품과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산 PCBAs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산 PCBAs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절단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중국에서 다수의 기계 부품과 결합된 후 비로소 완성된 워터젯 절단기가 됨 • 또한, 중국산 부품 비용 및 조립 시간이 PCBA 생산에 소요되는 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2) 최종제품의 본질적 기능 자체가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


제품	에어컨 실외기
사례번호	NY N352477(2025.08.29.)
제조공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축기, 압축기, 구리 튜브, 기타 부품 제작 -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출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를 활용해 제어용 PCBA 제작 - 플라스틱 펠릿을 사출 성형하고 기타 부품과 조립하여 팬 서브 어셈블리 제작 - 중국산 응축기 및 압축기를 사용하여 응축기, 압축기 서브 어셈블리 제작 - 각 서브 어셈블리 및 기타 부품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냉난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중국산 응축기 및 압축기이며, 태국에서 수행된 PCBA 생산, 최종 조립 등의 공정은 중국산 응축기 및 압축기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② 기계 및 자동차 부품


판정 기준:

CBP는 특정 기계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핵심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볼 베어링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볼 베어링	
사례번호	NY N346258(2025.03.1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0622(2025.07.21.), NY N346900(2025.04.07.), NY N348813(2025.05.27.), NY N348812(2025.05.29.), NY N349600(2025.06.25.), NY N351996(2025.08.20.), NY N351140(2025.07.23.), NY N351999(2025.08.27.), NY N354169(2025.10.17.)	
제조공정	[중국 혹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봉을 냉간압연 및 조연삭 공정으로 단조하여 내륜과 외륜 생산 - 단조된 내륜과 외륜은 이후 중국 혹은 일본에서 선삭 및 열처리됨 - 선삭 및 열처리된 내륜 및 외륜을 태국으로 수출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을 통해 링을 레이스로 전환 - 태국에서 롤러가 들어 있는 케이지와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베어링의 원산지는 베어링의 본질인 레이스의 원산지를 고려해야 하며, 베어링의 기본적 특성과 용도는 강철 링이 정밀 레이스웨이를 가진 레이스로 연삭 및 마감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이러한 공정이 이루어진 태국이 원산지임	
핵심 요소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에어백 시스템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에어백 시스템	
사례번호	NY N352536(2025.09.0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2543(2025.09.09.)	
제조공정	[미국, 태국, 중국,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팽창기, 태국산 에어백 쿠션 및 플레이트, 중국산 하드웨어, EU산 라벨을 한 국으로 수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커버 및 조명 생산 - 여러 국가산 부품을 최종 조립하여 에어백 시스템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핵심 기능은 팽창된 에어백이 수행하므로, 원산지는 에어백 생산국인 태국임	
핵심 요소	에어백 쿠션	

컨트롤 암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컨트롤 암	
사례번호	NY N355929(2025.11.26.)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5444(2025.02.21.)	
제조과정	[중국] - 컨트롤 암 본체 및 부싱 생산 - 중국산 부품을 인도로 수출 [인도] - 볼 조인트, 기타 하드웨어 생산 - 중국산 부품 및 인도 부품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컨트롤 암의 특성은 볼 조인트에 의해 부여되므로, 원산지는 인도임	
핵심 요소	볼 조인트	

유의사항


- CBP는 컨트롤 암의 원산지 판정 시 볼 조인트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하나, 볼 조인트가 최종 제품에 전용될 정도로 완성된 상태가 아닌 블랭크 상태일 경우에는 국가간 공정을 비교하여 원산지를 결정함

제품	컨트롤 암
사례번호	NY N352477(2025.08.29.)
제조과정	[중국 및 브라질] - 중국에서 강봉을 단조해 볼 조인트, 볼 스테드, 컨트롤 암 바디 하우징 블랭크 생산 - 브라질에서 부싱 생산 - 중국산 블랭크 및 브라질산 부싱 등을 태국으로 수출 [태국] - 중국산 블랭크를 가공(정밀가공, 선삭, 드릴링, 열처리, 탈지 등)하여 완성된 형태의 볼 조인트, 볼 스테드, 컨트롤 암 바디 하우징 생산 - 기타 부품과 조립하여 최종제품 완성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는 볼 조인트가 컨트롤 암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정해 옴 • 다만, 이 사례에서 중국산 볼 조인트 블랭크는 최종 형상으로 명확히 인식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태국에서의 상당한 공정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가공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태국으로 판정함


브레이크 패드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브레이크 패드	
사례번호	NY N346445(2025.03.25.)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3141(2025.09.30.)	
제조과정	[중국] - 심, 백킹 플레이트, 마찰 블록 등을 생산하여 캄보디아로 수출 [캄보디아] - 마찰 혼합물 생산 및 마찰 블록과 결합하여 마찰재 생산 - 백플레이트와 마찰재 결합 - 기타 표면 가공 및 조립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CBP는 브레이크 패드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마찰재라고 보며, 이 사례에서 마찰재는 캄보디아에서의 공정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가공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핵심 요소	마찰재	

워터 펌프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워터 펌프	
사례번호	NY N351349(2025.07.2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081(2025.04.10.), NY N345436(2025.02.05.)	
제조과정	[베트남] - 임펠러, 메인 하우징, 백플레이트, 플러그 등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중국] - 베어링, 씰, O-링, 허브, 개스킷 등 기타부품 생산 - 베트남산 부품과 중국산 기타 부품을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최종 조립 공정은 간단하여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고, 워터 펌프의 핵심 구성요소는 임펠러이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핵심 요소	임펠러	

밸브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볼 밸브 및 버터플라이 밸브	
사례번호	NY N355399(2025.11.20.)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9668(2025.06.17.)	
제조과정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인도] - 본체, 플랜지, 씰, 스템이 부착된 볼을 생산하여 헝가리로 수출 [독일] - 시트를 생산하여 헝가리로 수출 [헝가리] - 세정, 샌드 블라스팅, 최종 조립 수행	[중국] - 밸브 본체를 생산하여 헝가리로 수출 [기타 국가] - 밸브 생산에 사용되는 기타 부품을 생산하여 헝가리로 수출 [헝가리] - 최종 조립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 조립 공정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CBP는 밸브의 원산지를 고려할 때, 밸브 본체의 원산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통상 밸브 구성품은 삽입, 압입, 나사 체결 등을 통해 밸브 본체에 조립되며, 이러한 공정들은 밸브 본체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볼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는 각각 인도 및 중국에서 공급되고, 헝가리로 반입되는 시점에서 유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볼 또는 디스크와 결합되도록 구성된 밸브 본체로 인식 가능하므로, 볼 밸브의 원산지는 인도, 버터플라이 밸브의 원산지는 중국임 	
핵심 요소	밸브 본체	

③ 케이블, 전선류

판정 기준:

USB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처럼 데이터 및 신호 전송이 주 목적인 케이블, 전선류 등에 대해서는 전기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도체/코어 생산국을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음

구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저전압 케이블	
사례번호	NY N353664(2025.09.30.)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6532(2020.03.14.), NY N347166(2025.04.21.), NY N348303(2025.05.08.), NY N348305(2025.05.08.), NY N348304(2025.05.08.), NY N348567(2025.05.19.), NY N349947(2025.06.18.), NY N349948(2025.06.18.), NY N350106(2025.06.24.), NY N350851(2025.07.10.), NY N350848(2025.07.10.), NY N351393(2025.07.24.), NY N353657(2025.09.24.), NY N356155(2025.11.26.)	
제조과정	[중국] - 인발, 어닐링, 연선 공정으로 제작한 알루미늄 도체를 한국으로 수출	[한국] - 압출, 번들링, 절연 처리 등을 수행하여 저전압 케이블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중국산 도체/코어가 핵심 기능인 전기 전달 기능을 수행하여 완성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한국에서 수행되는 절연 및 기타 공정은 단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핵심 요소	도체/코어	

광섬유 케이블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광섬유 케이블	
사례번호	NY N347034(2025.04.07.)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805(2025.05.02.), NY N348409(2025.05.13.), NY N348698(2025.05.19.), NY N348939(2025.05.20.), NY N348827(2025.05.21.), NY N348743(2025.05.21.), NY N348990(2025.05.22.), NY N351372(2025.07.28.), NY N351888(2025.08.13.), NY N354398(2025.10.16.), NY N355902(2025.12.02.), NY N356189(2025.12.03.)	
제조과정	[미국] - 유리 원재료를 용융, 연마, 폴리머 코팅 등 하여 생산한 광섬유 코어를 중국으로 수출	[중국] - 광섬유 코어 절단, 착색, 피복, 커넥터 추가, 시험, 포장 등의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미국에서 제조된 광섬유 코어가 완성 케이블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를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미국임	
핵심 요소	도체/코어	

유의사항

- CBP는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도체/코어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원재료(구리, 알루미늄 등)를 단순히 인발(drawing)하여 가늘게 늘리거나, 연선(stranding)하여 여러 가닥으로 꼬아 하나의 도체로 만들거나, 단순히 외피를 입히는(encapsulating) 등의 단일 공정만 수행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음
- 반면 한 국가 내에서 복수의 공정이 수행되고 기준에 투입된 원재료(구리, 알루미늄 등)보다 전기적 특성이 크게 향상되어 최종제품의 기능 및 사양에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제품	SE 케이블 (Service Entry Cables)
사례번호	HQ H329104 (2024.03.28.)
제조공정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로드/와이어를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로드를 인발하여 특정 직경의 와이어로 가공 (Drawing) - 와이어를 꼬아 압축 연선 도체 제작 (Stranding) - 가교 폴리에틸렌 등 열가소성(또는 열경화성) 화합물로 피복 압출 (Extrusion) - 절연 도체를 가열 처리 (Heat Treatment) - 조립을 위해 가공 보빈 처리 - 절연 코어에 스파크 테스트 수행 - 여러 개의 절연 코어를 꼬아 하나의 SE 케이블 유닛으로 조립 - PVC 외피를 입혀 최종 SE 케이블 완성 - 품질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사유 및 결과	한국에서의 공정은 인발, 연선, 압출 등 여러 공정이 결합된 복합 공정으로, 최종제품은 관련 산업 표준과 사양을 충족하여 상업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력 공급용 전선으로 변형되었으므로, 한국이 원산지임

- 광섬유와 관련하여서도 유리 입자 등의 원재료를 프리폼(preform)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광섬유 케이블의 본질적 특성이 형성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후 프리폼을 인발하거나 외피를 입히거나 케이블화하는 등의 단일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광섬유 케이블의 핵심 구성요소는 프리폼으로 여겨지나, 광트랜시버 모듈처럼 광섬유 케이블 자체가 아니라 전자·광 부품의 복합 기기인 경우 최종제품의 기능 및 용도에 더 크게 작용하는 메인 PCBA와 같은 부품이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될 수 있음

제품	광트랜시버 모듈
사례번호	NY N344720(2025.01.13)
제조공정	<p>[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국가산 560개의 전기부품으로 메인 PCBA를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섬유가 포함된 OSA(optical subassembly) 생산 - 메인 PCBA와 OSA를 결합하여 생산된 OSA on PCBA를 태국으로 수출 <p>[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이고 복잡하며, 특히 태국산 메인 PCBA가 최종제품의 핵심 구성요소임 •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제조공정은 메인 PCBA의 용도를 변형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메인 PCBA의 원산지인 태국임

④ 정수·공기 필터

판정 기준:

CBP는 일정 필터류에 대해서는 필터의 기능이 특정 물질을 거르는 것에 있다고 보아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 매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음

정수 필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교체용 정수 필터	
사례번호	NY N345851(2025.02.26.)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5850(2025.02.25.), NY N346965(2025.04.01.), NY N346964(2025.04.01.), NY N348086(2025.05.01.), NY N348297(2025.05.02.), NY N347698(2025.05.02.), NY N348710(2025.05.12.), NY N348711(2025.05.12.), NY N349316(2025.06.05.), NY N350079(2025.06.25.), NY N350082(2025.06.25.), NY N350826(2025.07.25.), NY N351887(2025.08.18.), NY N353301(2025.09.30.)	
제조공정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블록(필터 매체)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RFID 칩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ng 삽입 및 외관 검사 - 용접을 통한 커버 및 부품 접합 - 기타 테스트 및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복잡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교체용 정수 필터의 핵심 구성요소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 여러 구성요소 중 탄소 블록은 상당한 기술과 맞춤형 설비를 토대로 한국에서 생산되고 가장 고가의 부분이며 실제로 물을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함 • 핵심 구성요소인 탄소 블록이 생산된 한국이 최종 원산지임 	
핵심 요소	탄소 블록(필터 매체)	

공기 필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자동차용 공기 필터	
사례번호	NY N351082(2025.07.22.)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1081(2025.07.22.), NY N351807(2025.08.07.), NY N351809(2025.08.07.), NY N352485(2025.09.02.), NY N352562(2025.09.04.), NY N352595(2025.09.05.), NY N352564(2025.09.08.), NY N352717(2025.09.08.), NY N352765(2025.09.08.), NY N352954(2025.09.15.), NY N352956(2025.09.16.), NY N353148(2025.09.19.), NY N353724(2025.09.30.), NY N353725(2025.09.30.), NY N354015(2025.10.02.)	
제조과정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 용지, 접착제, 가장자리 스트립, 이중 층 블리스터 필름, 컬러 박스, 설명서, 라벨 등을 생산하여 태국으로 수출 <p>[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 용지 주름 가공 처리 - 초음파 용접, 가장자리 처리 및 트리밍 - 접착제 도포, 코팅 분사, 플라스틱 실링 및 최종 포장 등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지 않음 • 중국산 필터지는 완성 필터의 주요 여과 구성요소로 판단되며, 해당 필터지가 태국에서 주름 가공 처리되고 기타 부차적 구성품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지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하지는 않음 • 따라서, 필터지가 제조되는 중국이 원산지임 	
핵심 요소	필터 용지(필터 매체)	

유의사항

- 필터류 제품이라 할지라도, CBP는 최종제품이 수행하는 기능, 용도 등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의 정도, 부가가치 창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핵심요소가 아닌 총체적 상황에 기반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일례로, 아래 사례의 오일 필터의 경우, 핵심 구성요소 판단이 아닌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오일 필터의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로 판정함


제품	자동차용 오일 필터	
사례번호	NY N355150(2025.11.10.)	
제조과정	1.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산 구성요소를 말레이시아로 수입 및 조달	
	국가	구성요소
	중국	냉간 강재 원재료, 전기도금 강선, 용융아연도금 강판, 접착제, 다이어프램, O-링, 실링 플레이트, 커버 플레이트, 실링 링, 상자, 라벨
	한국	필터 용지
	말레이시아	필터 하우징, 오일 필터, 스프레이 셸 조립체, 셸, 백색 분말, 오일 필터 요소 조립체, 상하부 커버, 중앙 튜브, 클립, 플레이트 및 기타 부품
	2. 말레이시아에서 다음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 용지에 주름 가공 - 슬리팅, 펀칭, 엠보싱 등의 형상 가공 - 기타 부품들 조립 및 결합하여 완성 	
판정 사유 및 결과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제조 및 조립 공정은 중국산 및 한국산 구성요소를 개별 구성품과는 다른 명칭, 성질 및 용도를 가진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시킨다고 판단됨	

⑤ 의약품


판정 기준:

- CBP는 특정 활성 의약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이하 API)을 기초로 생산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당 1) API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두 가지 이상의 API가 혼합되고 이러한 2) 혼합으로 인해 의학적 이점이 발생하는 경우 혼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단순히 의약품을 대량 형태에서 정량 투여량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사제 및 기타 용액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ZYMFENTRA™(인플릭시맵-dyyb) 주사제	
사례번호	NY N352591(2025.09.18.)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5194(2025.02.06.), NY N345354(2025.02.07.), NY N346811(2025.04.04.), NY N349744(2025.06.26.), NY N350938(2025.08.01.), NY N352251(2025.09.02.), NY N353604(2025.10.10.), NY N353960(2025.10.17.)	
제조과정	[싱가포르] - 싱가포르산 API와 비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생산된 원액을 독일로 수출 [독일] - 주사기 및 오토 인젝터 펜에 원액을 충전한 후 한국으로 수출 [한국] - 라벨 부착 및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독일 및 한국에서 수행된 가공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산지는 API가 제조된 싱가포르임	
핵심 요소	활성 의약 성분 (API)	

연고 및 크림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니트로글리세린 연고	
사례번호	NY N348080(2025.05.15.)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352(2025.04.25.)	
제조과정	[미국] - API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생산하여 인도로 수출 [인도] - 니트로글리세린을 기타 비활성 성분과 혼합하여 연고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API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비활성 성분과 혼합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 제품의 특성은 미국산 API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산지는 미국임	
핵심 요소	활성 의약 성분 (API)	

정제 및 캡슐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경구피임약	
사례번호	NY N354255(2025.10.24.)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0471(2025.07.18.), NY N350643(2025.07.24.), NY N351439(2025.08.12.), NY N353195(2025.10.01.), NY N354258(2025.10.24.), NY N354437(2025.10.28.), NY N355108(2025.11.18.), NY N356225(2025.12.15.)	
제조과정	[독일 및 네덜란드] - API인 Levonorgestrel(독일산)과 Ethinyl Estradiol(네덜란드산)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두 가지 API를 다양한 비활성 성분과 혼합하여 경구피임약 생산	
판정 사유 및 결과	두 가지 API의 혼합물은 각 API를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효능을 제공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핵심 요소	혼합+의학적 이점	

유의사항

- 의약품과 관련하여, CBP는 대량 형태에서 정량 투여량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제품	Ponstel® 캡슐
사례번호	HQ H233356 (2012.12.26.)
제조과정	1. 인도산 API인 메페나믹산 분말을 미국으로 수입 2. 메페나믹산을 비활성 성분과 혼합하여 제형으로 가공 - 비활성 성분: 유당수화물, D&C 황색 10호, FD&C 황색 6호,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및 식품 등급 잉크 등이 포함
판정 사유 및 결과	CBP는 일관되게 대량 생산된 의약품을 정량 포장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미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인도산 메페나믹산의 화학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임
참고 사례	HQ 561975(2002.04.03.), HQ 561544(2000.05.01.), HQ 735146(1993.11.15.), HQ H267177(2015.11.05.), HQ 561975(2002.04.03.)

⑥ 화장품


판정 기준:

CBP는 스킨케어 제품, 립, 눈 화장 제품 등 화장품류에 대해서는 여러 원료가 계량, 가열, 균일화,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벌크 상태의 혼합물로 생산된 곳을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함


립 제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립 제품	
사례번호	NY N352802(2025.09.17.)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1523(2025.08.19.), NY N355166(2025.11.19.)	
제조과정	[한국] - 여러 국가산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 - 혼합,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벌크 상태의 혼합물을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중국산 용기에 충전 및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한국에서 수행된 원료 혼합 및 가공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킴	
핵심 요소	계량, 혼합 등을 통한 벌크 상태의 혼합물 생산	

스킨케어 제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바디로션	
사례번호	NY N351352(2025.07.24.)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1305(2025.07.24.), NY N351306(2025.07.24.), NY N351524(2025.08.19.), NY N352807(2025.09.17.), NY N355168(2025.11.19.)	
제조과정	[베트남] -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유화제, 방부제, 오일, 안정제, 보습제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 - 가열, 혼합, pH 및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벌크 형태의 제형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중국산 소매용 용기에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 발생	
핵심 요소	계량, 혼합 등을 통한 벌크 상태의 혼합물 생산	

눈 화장 제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마스카라	
사례번호	NY N352805(2025.09.16.)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2804(2025.09.18.), NY N355167(2025.11.19.)	
제조과정	[한국] - 여러 국가산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 - 통제된 온도 하에서 품질 관리, 여과 등 여러 단계의 혼합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된 벌크 상태의 혼합물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중국산 용기에 충전 및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한국에서의 공정은 원재료를 화장품에 적합한 벌크 상태의 혼합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핵심 요소	계량, 혼합 등을 통한 벌크 상태의 혼합물 생산	

유의사항

- 한 가지 원료를 단순히 희석하는 등의 공정은 단순 공정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제품	바디 미스트
사례번호	NY N350030(2025.07.09.)
제조과정	1. 싱가포르 또는 태국산 단일 향료 베이스를 중국으로 수입 2. 중국에서 알코올, 프로필렌글리콜 및 물과 혼합 3. 중국산 펌프 스프레이 병 또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에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료 베이스는 중국에서 희석 및 스프레이 병에 포장되어 분사에 적합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고 단순히 농도 및 점도상의 변화만 발생하게 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향료 베이스의 원산지인 싱가포르 또는 태국임

⑦ 펄프, 종이 제품


판정 기준:

- 일반적으로 아래 종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함
 - 화장지 등 일반 종이 제품에 대해서는 원지가 생산되는 국가
 - 종이 접시, 종이 폴더 등 특정 모양으로 추가 가공 및 성형되는 경우, 최종 형태로 성형이 발생한 국가
 - 세정용 물티슈의 경우 세정 작용에 목적이 있으므로, 세정 용액이 생산된 국가


일반 종이 제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화장지	
사례번호	NY N348227(2025.05.12.)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4916(2025.01.12.), NY N344917(2025.01.12.), NY N344918(2025.01.12.), NY N345206(2025.01.21.), NY N345195(2025.01.24.), NY N345386(2025.01.29.), NY N345915(2025.02.26.), NY N346908(2025.03.26.), NY N347059(2025.04.02.), NY N348875(2025.05.22.), NY N350339(2025.06.25.)	
제조공정	[인도네시아] - 롤 형태의 원지를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중국] - 풀기, 엠보싱, 절단, 품질 관리 등의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중국에서 행해진 풀기, 엠보싱, 절단 등의 공정은 인도네시아산 원지를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핵심 요소	원지	

성형 종이 제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종이 접시	
사례번호	NY N348329(2025.05.15.)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646(2025.04.29.), NY N347645(2025.04.29.), NY N347648(2025.04.29.), NY N348208(2025.05.22.), NY N348805(2025.05.30.)	
제조공정	[중국] - 롤 형태의 원지를 생산하여 대만으로 수출 [대만] - 절단, 인쇄 및 성형하여 접시 모양으로 제작	
판정 사유 및 결과	대만에서 종이가 금형 절단되어 형태를 갖추고, 인쇄되며, 접시 형태로 성형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종이 접시의 원산지는 대만임	
핵심 요소	최종 형태 성형	

세정용 종이 제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물티슈	
사례번호	NY N352216(2025.09.08.)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061(2025.04.14.), NY N350571(2025.07.15.), NY N351552(2025.08.12.)	
제조공정	[중국] - 부직포 베이스 시트 롤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 [한국] - 베이스 시트 롤 풀기, 절단 - 세정 용액 생산 및 부직포에 함침 - 절단, 압축 및 소매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중국산 베이스 시트 재료는 단순한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세정 용액의 생산지인 한국임	
핵심 요소	세정 용액	

⑧ 플라스틱, 고무 성형 제품


판정 기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및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 플라스틱·고무 성형물에 대해서는 최종제품의 형태로 성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함


플라스틱 컵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플라스틱 컵	
사례번호	NY N348209(2025.05.16.)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1651(2025.08.08.), NY N354086(2025.10.17.)	
제조과정	[중국] -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가열, 금형 투입, 최종 모형 성형 등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플라스틱을 특정 모양으로 성형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핵심 요소	최종 형태 성형	

휴대폰 케이스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휴대폰 케이스	
사례번호	NY N349310(2025.06.11.)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8910(2025.06.06.)	
제조과정	[중국] -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플레이트를 성형하여 케이스 생산 - 케이스 및 기타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출 [태국] - 기타 부품 및 태국산 필름, 포장재와 함께 최종 결합	
판정 사유 및 결과	중국산 플라스틱 부품이 완제품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핵심 요소	최종 형태 성형	

고무 장갑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니트릴 고무장갑	
사례번호	NY N353943(2025.10.15.)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5033(2025.10.31.), NY N354627(2025.10.30.)	
제조과정	[말레이시아] - 액체 형태의 한국산 니트릴 라텍스를 말레이시아로 수입하여 최종 형태로 성형 -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사이즈별 선별, 세척, 건조,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제조공정은 재료 구성 요소(니트릴 고무 및 화학 물질)를 기능적인 장갑으로 변환시키므로,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	
핵심 요소	최종 형태 성형	

⑨ 수공구류


판정 기준:

- 렌치, 드라이버, 망치 등 수공구에 대해서는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이 어느 국가에서 최종 형상, 치수, 기능적 정체성을 획득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단일 작용 부위가 최종 형태를 갖춘 블랭크로 제작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특별한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거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공구 등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렌치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렌치	
사례번호	NY N350720(2025.07.02.)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6315(2025.03.12.), NY N347615(2025.05.05.), NY N347937(2025.05.06.), NY N350720(2025.07.02.), NY N355030(2025.10.30.), NY N355031(2025.11.10.), NY N355707(2025.11.25.)	
제조과정	[베트남] - 탄소강을 절단, 스탬핑 등 하여 렌치 형상으로 제작한 후 중국 수출 [중국] - 해당 블랭크를 중국으로 수출 후 추가 밀링 가공, 소켓 치수 각인, 열처리 및 연마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탄소강이 베트남에서 이미 최종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핵심 요소	최종 형태의 블랭크	

🔨 망치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망치	
사례번호	NY N348537(2025.05.0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009(2025.04.04.)	
제조과정	[베트남] - 강철봉 및 강판을 가공하여 망치 머리 블랭크를 생산한 후 중국 수출 [중국] - 강철 손잡이 용접, 플라스틱 사출 성형 코팅 등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최종제품의 본질은 망치 머리에 있고, 베트남에서 이미 최종 형태로 제작되었으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핵심 요소	최종 형태의 블랭크	

유의사항

- 공구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어 조립되며, 각 부분들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함

제품	파이프 렌치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제조과정	공통사항: 한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을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	
	NY N332258	NY N332515
판정 사유 및 결과	한국 • 손잡이, 조절 조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한국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 N332258: 한국산 부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완성품 상태는 아니었고, 중국에서의 추가 가공과 다른 핵심 부품의 결합을 통해 완성품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중국산) • NY N332515: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해당 부품들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한국산) 	

-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공구인 경우 최종제품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짐


제품	스크루 · 너트 드라이버	
사례번호	HQ H305966 (2020.04.16.)	
제조과정	[중국] - 강철을 가공하여 샤프트(shaft) 및 칼라(collar)를 생산한 후 대만 수출 [대만] -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 제조 - 손잡이에 칼라 압입 - 샤프트에 비트 삽입 후 손잡이에 결합 - 제품 라벨 부착 및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atNeck 6-in-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 • 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재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며, 완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 • 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⑩ 기타 개별 물품


🔍 주얼리(목걸이, 반지, 팬던트, 귀걸이 등)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목걸이	
사례번호	HQ H348567(2025.06.06.)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6162(2025.03.07.), NY N346349(2025.03.24.), NY N347011(2025.04.17.), NY N347703(2025.05.06.), NY N348137(2025.05.15.), NY N350026(2025.07.08.), NY N351701(2025.08.22.), NY N351932(2025.08.22.), NY N351989(2025.08.22.), NY N351993(2025.08.30.), NY N352371(2025.09.08.), NY N353504(2025.10.06.)	
제조과정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프린팅으로 주형틀 제작 - 왁스 주형틀로 18k 금 주물 생산 - 인도 또는 태국으로 수출 <p>[인도 또는 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마, 세척 등 수행 - 다양한 원산지의 보석 세팅 	
판정 사유 및 결과	금속 합금을 주조하여 보석류를 만드는 행위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반면, 단지 보석을 세팅하는 행위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주조가 이루어진 미국임	
핵심 요소	주물 주조	


🕒 손목시계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손목시계	
사례번호	NY N351984(2025.08.13.)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제조과정	<p>[필리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시계 무브먼트 조립 - 다이얼, 바늘, 베젤, 유리, 시계 줄 등 장착 	
판정 사유 및 결과	시계의 원산지는 무브먼트가 조립된 국가이며, 무브먼트가 시계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무브먼트가 생산된 국가인 필리핀이 원산지임	
핵심 요소	무브먼트	


🪵 테이블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테이블	
사례번호	HQ H338728(2025.05.13.)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6641(2025.03.25.)	
제조과정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다리, 플라스틱 부품 등을 생산한 후 캐나다로 수출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판 제작 - 중국산 부품에 추가 가공 수행 - 일부 조립 및 하드웨어 분류,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테이블에 기능성을 부여하며 무게, 시각적 매력 및 효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판이 테이블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상판을 제작한 캐나다가 원산지임	
핵심 요소	상판	


🪄 래칫 타이 다운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래칫 타이 다운	
사례번호	NY N348592(2025.05.27.)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1767(2025.08.07.), NY N352594(2025.08.29.), NY N355742(2025.11.14.), NY N355901(2025.11.25.)	
제조과정	<p>[베트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산 방적사를 직조하여 스트랩을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후크, 래칫 어셈블리와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소비자가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래칫 타이 다운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특성은 스트랩에 의해 부여되는 바, 원산지는 베트남임	
핵심 요소	스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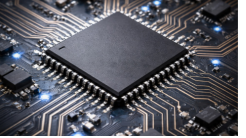
 수도꼭지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수도꼭지	
사례번호	NY N352837(2025.09.0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840(2025.05.07.), NY N350185(2025.07.09.), NY N352495(2025.09.02.), NY N353576(2025.09.30.)	
제조과정	[대만] - 두 개의 카트리지 밸브를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중국] - 밸브 검사 및 기타 중국산 부품(너트, 본체, 에어레이터 등)과 결합	
판정 사유 및 결과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카트리지 밸브의 형상, 특성 또는 예정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수도꼭지의 핵심 구성요소는 카트리지 밸브이므로, 원산지는 대만임	
핵심 요소	카트리지 밸브	


 양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양초	
사례번호	NY N351477(2025.08.04.)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제조과정	[홍콩, 독일 및 중국] - 홍콩산 왁스, 독일산 심지, 중국산 유리병 및 라벨을 베트남으로 수출 [베트남] - 왁스를 녹여 화병에 붓고 라벨 부착	
판정 사유 및 결과	왁스를 용기에 부어 양초를 형성하는(pouring)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므로, 베트남이 원산지임	
핵심 요소	Pouring 공정	


 집적회로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집적회로	
사례번호	NY N350711(2025.07.10.)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6922(2025.04.02.), NY N347292(2025.04.08.), NY N347890(2025.04.16.), NY N347497(2025.05.02.), NY N352561(2025.09.10.), NY N352821(2025.09.22.), NY N354283(2025.10.20.), NY N355546(2025.11.25.)	
제조과정	[중국] -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 [한국] - 프론트 엔드 공정 수행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백 엔드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프론트 엔드 공정이 의미 있고 복잡한 공정이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핵심 회로를 내장한 집적회로를 창출하므로, 한국이 원산지임	
핵심 요소	프론트 엔드 공정	


 인형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인형	
사례번호	NY N347170(2025.04.0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8808(2025.05.28.), NY N349688(2025.06.17)	
제조과정	[중국] - 폴리에스터 원단 및 충전재를 생산하여 캄보디아로 수출 [캄보디아] - 재단, 섬유 충전, 봉제 등의 공정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인형의 형태 재단 및 봉제 과정을 통해 완제품의 특성이 결정되므로, 캄보디아가 원산지임	
핵심 요소	재단/봉제	


 생선 필레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생선 필레	
사례번호	NY N348299(2025.05.28.)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47400(2025.04.28.)	
제조과정	[미국] - 미국 국적 선박이 알래스카 만에서 어획한 대구, 연어, 명태를 중국으로 운송 [중국] - 해동, 세척, 필레 공정, 껍질 제거, 가시 제거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CBP는 필레 가공되고 처리된 어류는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하는 바, 중국이 원산지임	
핵심 요소	필레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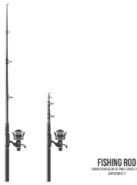
 자전거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자전거	
사례번호	NY N345038(2025.01.27.)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0528(2025.07.10.), NY N353045(2025.09.19.)	
제조과정	[대만] - 자전거 프레임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 벨트 구동 및 변속 시스템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소형 부품 제조 및 최종 조립	
판정 사유 및 결과	자전거의 본질은 프레임에 있으므로, 원산지는 대만임	
핵심 요소	프레임	
기타사항	• 전동 스쿠터, ATV 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프레임을 핵심 요소로 간주한 사례 - 전동 스쿠터: NY N344694(2025.01.14.) - ATV: NY N344843(2025.01.22.) - 전기 자전거: NY N350306(2025.07.03.), NY N351057(2025.07.24.), NY N356544(2025.12.22.) - 가솔린 엔진 미니 오프로드 바이크: NY N349019(2025.06.12.)	


 태양광 패널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태양광 패널	
사례번호	NY N355286(2025.11.19.)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제조과정	[대만] - 태양광 셀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태양광 셀을 EVA 필름 및 백시트에 솔더링 - 중국산 알루미늄 프레임, J-BOX 등을 포함하여 필리핀으로 수출 [필리핀] - 프레임 조립, 배선, 테스트 수행	
판정 사유 및 결과	대만에서 제조된 태양광 셀이 패널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므로, 원산지는 대만임	
핵심 요소	셀	
기타사항	• OLED 모듈, TFT-LCD 모듈 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셀을 핵심 요소로 간주한 사례 - OLED 모듈: NY N345328(2025.02.19.), NY N345329(2025.02.19.) - TFT-LCD 모듈: NY N345963(2025.03.11.), NY N345991(2025.03.12.), NY N354567(2025.10.28.)	

 낚싯대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낚싯대	
사례번호	NY N353511(2025.10.07.)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NY N353399(2025.10.08.)	
제조과정	[미국] - 수입자 요구 사양에 맞게 낚싯대 블랭크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손잡이, 릴 시트, 가이드, 훅 키퍼 제조 후 최종 결합	
판정 사유 및 결과	낚싯대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로드 블랭크이며, 낚싯대 부품들을 블랭크에 조립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미국임	
핵심 요소	로드 블랭크	

소형 드론

설명		참고용 이미지
제품	소형 드론	
사례번호	NY N352538(2025.10.03.)	
2025년 관련 유사 사례		
제조과정	[한국] - 중국산 구동 모터 및 전동 모터와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콘덴서, 인덕터, 트랜지스터, 센서, 커넥터, 배터리 등을 한국으로 수입 - 한국 내에서 PCB 조달 및 SMT를 활용해 각종 전자 부품을 PCB에 부착하여 PCBA 생산 - 완성된 PCBA를 추가 부품과 함께 드론 및 컨트롤러에 조립 - 비행, 방향 제어 및 코딩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탑재 - 소매용 박스에 포장	
판정 사유 및 결과	구동 모터가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핵심 요소	모터	

03 2025년 원산지 관련 사례 변경 사유와 시사점

분류 기준:

2025년 CBP가 원산지 관련 기존 결정문을 취소 또는 정정한 사례는 총 2건임

1) 브레이크 호스

■ 사례명: NY N302378 및 NY N331974의 취소: 브레이크 호스의 원산지

■ 사례번호: HQ H325607(2025.08.29.)

■ 판정

사례	판정(Holding)	기존 원산지 판정	취소 후 원산지 판정
① NY N302378 (2019.02.15.)	취소(Revoked)	중국	스페인
② NY N331974 (2023.05.03.)	취소(Revoked)	태국	일본

① NY N302378 사례 취소의 건

• 원재료 및 제조과정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산: 테플론 호스, 나일론 호스, 강선, 나일론 커버, 클램프 등 중국산: 피팅 및 기타 부품
제조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테플론 호스, 나일론 호스, 강선과 같은 유럽산 원재료를 스페인으로 조달 스페인에서 다음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스 위에 강선 편조 스페인 타 업체에서 공급받은 외부 나일론 커버를 압출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다음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스를 강철 피팅 및 유럽산 클램프와 조립

- 기존 판정
 - 호스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상태로는 HTSUS 제8707호에 해당하는 단순 금속 튜브에 불과하여 브레이크 호스로 식별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야 차량용일 경우 제 8708.99.81호, 오토바이용일 경우 제8714.10.00호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호스로 식별 가능하게 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취소 판정
 - 케이블 또는 호스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피팅이나 커넥터를 부착하는 것은 명칭, 특성 및 용도 기준상 최종 물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더불어, 스페인에서의 공정을 통해 호스에 강선이 편조되고 커버가 압출되어 브레이크 호스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므로, 스페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참고 사례: HQ 561392(1999.06.21.), NY N336508(2023.12.05.) 등
- NY N302378 및 NY N331974 사례의 취소 결정은 단순한 절단 및 피팅류 부착 등의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CBP의 논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 됨
- 취소 판정에서도 두 사례에서의 물품 모두 중국 및 태국으로 수입되기 이전에 강선 편조 보강 층 및 압출 플라스틱 커버 등이 결합 되어 브레이크 호스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중국 및 태국에서의 단순 절단 및 피팅류 부착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정함

② NY N331974 사례 취소의 건

• 원재료 및 제조과정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 불소수지, SUS 와이어 편조층, 열가소성 우레탄 외피로 구성된 호스 • 중국, 독일, 미국 및 태국산: 피팅 및 기타 부품
제조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벌크 롤 형태의 호스 및 여러 국가산 피팅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에서 호스를 특정 길이로 절단 및 압착하고 피팅을 부착하여 최종제품 완성

- 기존 판정
 - 태국에서 수행된 공정(절단 및 피팅 부착 등)은 벌크 호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것이므로, 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취소 판정
 - 벌크 상태의 호스는 이미 태국으로 수입되기 이전에 브레이크 호스로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하므로, 호스가 생산된 일본이 원산지임

■ CBP의 판단 변화(시사점)

- CBP는 이미 케이블, 호스 등에 대한 실질적 변형 판단 시 단순한 절단 및 피팅류 부착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옴

2) 공기청정기

- **사례명:** 실질적 변형 관련 공기청정기의 원산지
- **사례번호:** HQ H323218(2025.12.16.)
- **판정**

사례	판정(Holding)	기존 원산지 판정	정정 및 취소 후 원산지 판정
① NY N322364 (2021.11.18.)	정정(Modified)	시나리오 1: 베트남산 시나리오 2: 중국산	시나리오 1: 베트남산 시나리오 2: 베트남산
② NY N322681 (2021.12.01.)	취소(Revoked)	시나리오 1: 중국산 시나리오 2: 중국산	시나리오 1: 베트남산 시나리오 2: 베트남산

① NY N322364 사례 정정 건

- 원재료 및 제조과정

시나리오 1							
재료	- 베트남산 부품 및 구성품 비중이 전체 대비 약 56%를 차지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생산국</th> <th>재료</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UV 램프, UV 램프 홀더, 보호 보드, PCBA, 팬 스위치, 모터 스위치 어셈블리, HEPA 필터, 공기 배출구 철망, 전원 코드 등</td> </tr> <tr> <td>베트남</td> <td>모터,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UV 램프 박스 및 커버, 상부 커버, 상부 커버 캡, 제어 패널, 버튼 및 노브, 전면 커버 및 후면 하우징, 후면 커버, 블로어, 블로어 커버, 모터 브래킷, PCB 박스, 스위치 커버), 나사, 라벨, 포장재 등</td> </tr> </tbody> </table>	생산국	재료	중국	UV 램프, UV 램프 홀더, 보호 보드, PCBA, 팬 스위치, 모터 스위치 어셈블리, HEPA 필터, 공기 배출구 철망, 전원 코드 등	베트남	모터,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UV 램프 박스 및 커버, 상부 커버, 상부 커버 캡, 제어 패널, 버튼 및 노브, 전면 커버 및 후면 하우징, 후면 커버, 블로어, 블로어 커버, 모터 브래킷, PCB 박스, 스위치 커버), 나사, 라벨, 포장재 등
	생산국	재료					
중국	UV 램프, UV 램프 홀더, 보호 보드, PCBA, 팬 스위치, 모터 스위치 어셈블리, HEPA 필터, 공기 배출구 철망, 전원 코드 등						
베트남	모터,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UV 램프 박스 및 커버, 상부 커버, 상부 커버 캡, 제어 패널, 버튼 및 노브, 전면 커버 및 후면 하우징, 후면 커버, 블로어, 블로어 커버, 모터 브래킷, PCB 박스, 스위치 커버), 나사, 라벨, 포장재 등						
제조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입 베트남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 모터 등 생산 중국산 및 베트남산 부품으로 다음과 같은 서브 어셈블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어 패널(36단계), UV 램프 어셈블리(19단계), PCBA(4단계), 장식 램프 스트랩(11단계), 와이어/터미널 준비(7단계), 회전 스위치 어셈블리(3단계), UV 보호 보드 가공(4단계), 마이크로스위치 PCBA 설치(17단계), 모터 어셈블리 설치(17단계), 후면 셀/하우징 어셈블리(49단계) 최종 조립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성형 전문 하우징 검사(4단계), 전면 하우징에 철제 배출구 설치(4단계), 기계 내부에서 철제 배출구 고정부 형성 및 부착(4단계), 모터 구획 설치(3단계), 모터 브래킷을 전면 하우징에 부착(2단계), 공기 덕트를 전면 하우징에 부착(3단계), 상단 제어 패널 연결(6단계), UV 램프 부품 설치(8단계), PCB 박스 설치(4단계), PCB 내화 박스 설치(4단계), 상부 하우징 설치(2단계), 상부 커버 설치(3단계), UV 램프를 전면 하우징에 부착(3단계), 전면 및 후면 하우징 배선 연결(6단계), 전면 하우징과 후면 하우징을 조립하고 UV를 설치(10단계), 상부 커버와 UV 램프 보호 보드 고정(4단계), 필터를 후면 하우징에 부착(6단계) 						
시나리오 2							
재료 및 제조과정	시나리오 1과 유사하나, 기존에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터를 중국에서 생산하여 베트남산 부품 및 구성품 비중이 전체 대비 약 35%로 감소						

- 기존 판정

- 시나리오 1: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가공은 수입 구성품 및 부품을 베트남산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 시나리오 2: 중국산 모터가 공기청정기 제조에 매우 중요한 구성품이며, 가장 고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공정을 거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정정 판정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모두 중국산 개별 부품들은 베트남에서의 공정을 통해 정체성을 상실하여 새로운 상품의 통합적 일부가 되었으므로,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② NY N322681 사례 취소 건

- 원재료 및 제조과정

시나리오 1							
재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생산국</th> <th>재료</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모터, UV 램프, UV 램프 홀더 및 보호 보드, UV 램프 박스, UV 램프 커버, UV 램프 링 하위 어셈블리, PCBA, 팬 스위치, HEPA 필터, 공기 배출구 철망, 전원 코드 등</td> </tr> <tr> <td>베트남</td> <td>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 팬, 모터 프레임, 제어 패널, PCB 박스, 브래킷 및 스위치, 나사 및 패스터, 마이크로스위치 박스, 포장 부품 등</td> </tr> </tbody> </table>	생산국	재료	중국	모터, UV 램프, UV 램프 홀더 및 보호 보드, UV 램프 박스, UV 램프 커버, UV 램프 링 하위 어셈블리, PCBA, 팬 스위치, HEPA 필터, 공기 배출구 철망, 전원 코드 등	베트남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 팬, 모터 프레임, 제어 패널, PCB 박스, 브래킷 및 스위치, 나사 및 패스터, 마이크로스위치 박스, 포장 부품 등
	생산국	재료					
	중국	모터, UV 램프, UV 램프 홀더 및 보호 보드, UV 램프 박스, UV 램프 커버, UV 램프 링 하위 어셈블리, PCBA, 팬 스위치, HEPA 필터, 공기 배출구 철망, 전원 코드 등					
베트남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 팬, 모터 프레임, 제어 패널, PCB 박스, 브래킷 및 스위치, 나사 및 패스터, 마이크로스위치 박스, 포장 부품 등						
제조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입 베트남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 모터 등 생산 중국산 및 베트남산 부품으로 서브 어셈블리 제작 최종 조립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인 작업 공정은 NY N322364 사례와 유사 						
시나리오 2							
재료 및 제조과정	시나리오 1과 유사하나, 상·하부 팬 하우징, 팬, 프레임, 제어 패널, 브래킷 및 스위치 같은 추가 구성품이 중국에서 조달되며, 나머지 구성품 및 부품, 사출 성형 플라스틱 부품들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제조됨						

- 기존 판정

- 시나리오 1 및 시나리오 2: 모터, 팬, UV 램프, PCBA와 같은 중요한 서브 어셈블리들이 모두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러한 고가의 물품들이 공기청정기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며, 베트남에서의 공정은 복잡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두 시나리오 모두 중국임

• 취소 판정

- 시나리오 1 및 시나리오 2: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품 생산, 중국 및 베트남 산 부품을 각종 서브 어셈블리로 결합, 최종 조립 등의 공정은 상당한 수의 개별 구성품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가공 공정으로, 중국산 개별 부품들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통합된 일부가 되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 CBP의 판단 변화(시사점)

• 종래의 판정 경향

- (핵심 부품 중시): 기존의 결정례 중에는 핵심 구성요소의 원산지를 최종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됨. 과거 CBP는 공기청정기의 동력을 제공하는 '모터'의 기능과 가치를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음

• HQ H323218을 통한 판단 기준의 재검토

- (판정의 정정): CBP는 본 결정을 통해 기존의 판정 논리를 재검토하며, 특정 부품의 국적보다는 제조 공정의 '유기적 결합'에 무게를 둠. 이에 따라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상이한 원산지 부품들의 서브어셈블리(Sub-assembly)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공정의 복잡성을 평가하고, 최종 조립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공 정황'을 통해 중국산 부품들이 완제품의 통합적인 일부가 되었는지를 검토함

-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검토): 중국산 모터 자체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전환하는 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해당 모터가 베트남에서 전자 부품 및 팬 블레이드와 조립되어 '모터 어셈블리'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기 흐름을 생성하는 구체적 기능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함. 또한 모터 어셈블리가 타 서브어셈블리와 결합되어 완제품이 되기 전까지는 제품 본연의 목적인 '공기 여과 및 정화'가 불가능하므로, 베트남 내 공정을 통해 제품의 실질적 정체성이 확립된 것으로 해석함

• 실무적 시사점

- (총체적 상황 고려): 실질적 변형 판정 시 특정 핵심 구성요소에만 의존하기 보다, 제조 전 과정의 복잡성과 기능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임

04 비특혜 원산지 의사결정 로드맵

<p>Step 1 선행 결정례 검색</p>	<p>목적: 자사 제품과 유사한 선행 사례를 찾아 참고</p>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 CROSS에서 물품명, HS Code, 핵심 재료 등 키워드 검색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적 유사성에만 의존하지 말 것 • 여러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p>Step 2 판정 논리 분석</p>	<p>목적: CBP가 해당 사례에서 핵심 결정 요인으로 본 요소 파악</p> <p>분석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변형을 인정/부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떤 재료나 공정을 "핵심"으로 보았는가? • "단순"하다고 평가한 작업은 무엇인가? •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p>Step 3 자사 상황과 비교</p>	<p>비교 매트릭스 작성:</p> <table border="1" data-bbox="1874 921 2638 1146"> <thead> <tr> <th>비교 항목</th> <th>유사 사례</th> <th>자사 제품</th> <th>차이의 영향</th> </tr> </thead> <tbody> <tr> <td>주요 원재료</td> <td></td> <td></td> <td></td> </tr> <tr> <td>핵심 공정</td> <td></td> <td></td> <td></td> </tr> <tr> <td>제조 국가</td> <td></td> <td></td> <td></td> </tr> <tr> <td>공정의 복잡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부가가치</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점: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 차이점: 어떤 부분이 다른가? • 그 차이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비교 항목	유사 사례	자사 제품	차이의 영향	주요 원재료				핵심 공정				제조 국가				공정의 복잡성				부가가치			
비교 항목	유사 사례	자사 제품	차이의 영향																						
주요 원재료																									
핵심 공정																									
제조 국가																									
공정의 복잡성																									
부가가치																									
<p>Step 4 판정 신뢰도 평가</p>	<p>판정 신뢰도 및 리스크 등급 분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음: 유사 사례가 많고, 판정 논리가 명확하며, 자사와 조건이 거의 동일 • 중간: 유사 사례가 있으나 일부 조건이 다르거나, 판정 논리에 해석의 여지 있음 • 낮음: 유사 사례가 없거나, 사례 간 판정 결과가 엇갈리거나, 자사 제품이 회색지대에 있음 																								
<p>Step 5 최종 대응 시나리오 확정</p>	<p>판정 신뢰도에 따른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적으로 원산지 판단 진행 • 필요 시 사후 검증 대비 자료 준비 신뢰도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고려 • 추가 유사 사례 조사 • 보수적 접근 권장 신뢰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 사전 심사 신청 적극 검토 • 전문가 자문 검토 필수 • 대안 시나리오 마련 필요 																								

PART

III

유용한 사이트

1. 해외 사이트
2. 국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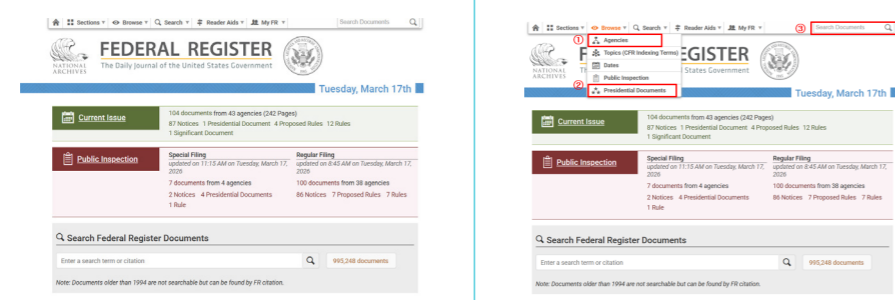


01 해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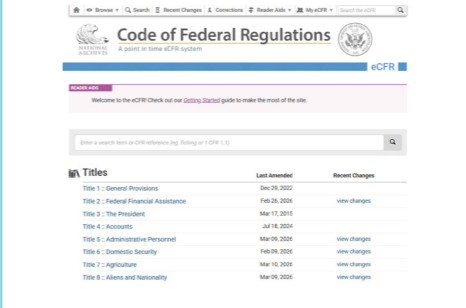
1) 백악관(The White House) 홈페이지

설명	미국 행정부 조직 구조,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대통령 행정명령, 포고령 등 확인 가능
URL	https://www.whitehouse.gov/
홈페이지	

2)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

설명	미국 연방정부 공식 관보로서, 최신 행정명령, 포고령, 정부기관별 최신 문서 확인 가능
URL	https://www.federalregister.gov/
홈페이지	
기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Browse 클릭 후 Agencies에서 각 정부 기관별 최신 문서 확인 가능 ② Browse 클릭 후 Presidential Documents에서 각 행정부별 공식 문서(행정명령, 포고령 등) 확인 가능 ③ Search Documents를 통해 특정 이슈 검색 가능

3) 미국 전자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설명	미국의 연방규정 검색 사이트
URL	https://www.ecfr.gov/
홈페이지	
기타 설명	Title 19에서 관세 및 통관(Customs Duties)에 대해 규정

4) 미국 무역 · 관세 통계 플랫폼

설명	미국 수출입 및 관세 데이터를 조회 · 분석할 수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데이터 플랫폼
URL	https://dataweb.usitc.gov/
홈페이지	
기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 Request: Build a new data query. Exports: Domestic: Domestic exports measures goods that are grown,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Exports: Foreign (Re-Exports): Foreign exports (also known as re-exports) measures goods that are not grown, produced Exports: Total: Total exports measures all good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omestic- or foreign-origin Imports: For Consumption: Imports for consumption measures the total merchandise that has cleared through U.S. Tari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S Search: Find correlations between HTS, SITC, and NAICS numbers. Tariff Database: Search for individual tariff lines using HTS category numbers or product descriptions. Tariff Annual Data: Access annual tariff data from 1997 to present available in a downloadable zip file format. Tariff Programs: View listings of U.S. trade agreements and programs with reduced/no tariffs on eligible goods. Future Tariff Rates Class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odity Translation Tool: Find correlations between HTS, SITC, and NAICS numbers. Commodity Description Lookup: Find HTS, SIC, SITC, NAICS, and End User codes and descriptions. NAICS System: Links to the U.S. Census Bureau'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Trade Data Repo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 Trade and Investment with Sub-Saharan Africa View U.S. trade data prepared by the USITC for

5) CBP 홈페이지

설명	수입 통관, 관세 집행, 무역구제, 수입 요건 등 대미 수출입 전반에 관한 공식 정보 제공
URL	https://www.cbp.gov/
홈페이지	

5-1) CBP 홈페이지: 화물 시스템 메시지 서비스(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CSMS)

설명	CBP의 통관 전산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관련 공지가 업로드되는 사이트로서, 통관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변경 사항, 관세 및 무역조치 시행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경로	CBP 홈페이지 → Trade → ACE: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ing System →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URL	https://www.cbp.gov/trade/automated/cargo-systems-messaging-service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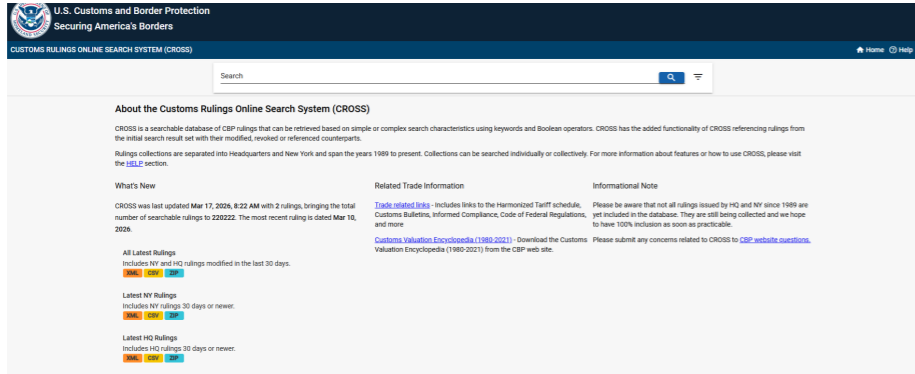
5-2) CBP 홈페이지: 제232조 품목 관세 관련 주요 FAQs

설명	제232조 품목 관세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 제공
경로	CBP 홈페이지 → Trade → Programs and Administration → Entry Summary and Post Release Processes → Section 232 Frequently Asked Questions
URL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232-tariffs-aluminum-and-steel-faqs
홈페이지	

5-3) CBP 홈페이지: 제301조 관세 관련 주요 FAQs

설명	제301조 관세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 제공
경로	CBP 홈페이지 → Trade → Programs and Administration → Entry Summary and Post Release Processes → Section 301 Trade Remedi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URL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section-301-trade-remedies/faqs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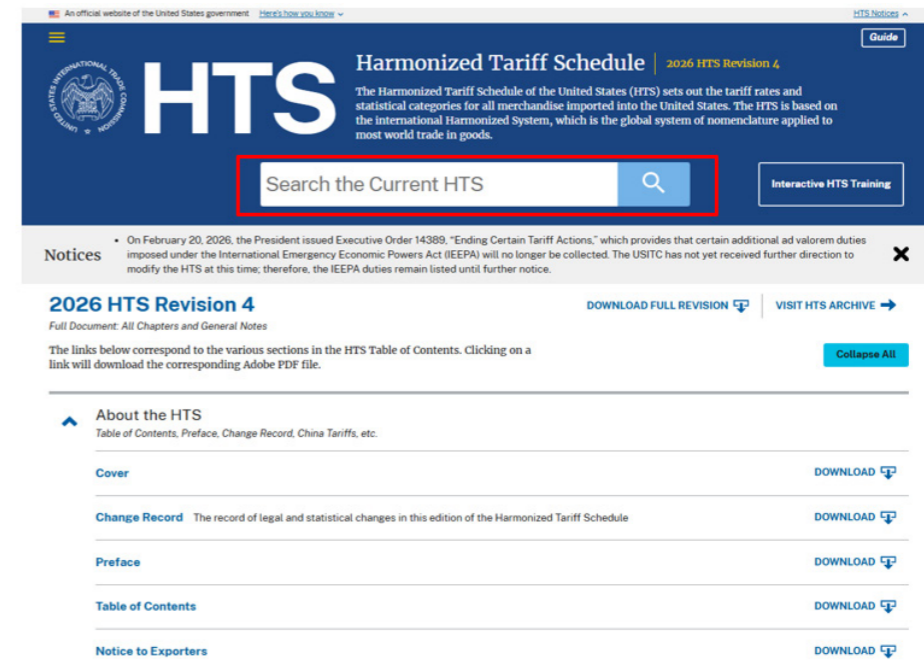
6) CBP 사전심사 결정문 검색 시스템 CROSS

설명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FTA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문 검색 가능
URL	https://rulings.cbp.gov/home
홈페이지	

7) CBP e-Ruling 신청 사이트

설명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 표시, FTA 등 협정 적용 여부에 대해 CBP에 전자적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	https://erulings.cbp.gov/s/
홈페이지	

8) 미국 관세율표(HTS) 검색 시스템

설명	미국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분류 체계(HTSUS), 관세율 및 관련 법규 확인 가능
URL	https://hts.usitc.gov/
홈페이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화면: HTS 소개(About the HTS), 일반주석(General Notes), 제1류부터 제99류를 포함하는 섹션(Sections), 부록(Appendices)으로 구성 • Search: 특정 단어 혹은 HTS Code를 입력하여 검색 가능

참고 - 미국 관세율표(HTS) 검색 결과 설명

■ 검색 결과 화면

검색 후 화면은 위와 같이 좌측 창, 우측 창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

- 좌측 창(1): 검색 결과 건수 및 검색 단어와 일치하는 모든 HTS Code 및 품목 설명 표시
- 우측 창(2,3): 상단 2의 탭에서 Rates(관세율), Chapter Note(류주), Section Notes(부주)를 선택하면 각 탭과 관련된 내용이 3 영역에 표시됨

■ Rate(관세율) 화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열리는 탭으로, 해당 품목의 HTSUS 구조와 관세율 정보 제시

Heading/ Subheading	Stat Suf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2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General	Special
0401.10.00	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percent	liters kg	0.340/liter / /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I) 0.50/liter
0401.2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percent but not exceeding 6 percent.			
0401.20.20	00	For not over 11,356,236 liters entered in any calendar year	liters kg cmisc	0.430/liter / /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I) 1.70/liter
0401.20.40	00	Other	liters kg cmisc	1.50/liter / /	Free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I) 1.70/liter
0401.4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percent but not exceeding 10 percent.			
0401.40.02	00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liters	3.20/liter / /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I) 150/liter
0401.40.05	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5 to this chapter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liters kg cmisc	3.20/liter / /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I) 150/liter
0401.40.25	00	Other / /	liters kg cmisc	77.20/liter / /	Free (BH CL CO JO KR MA OM P PA PE SGI) See 1927-04.05 (A18) See 90.80/liter

- 1 Heading/Subheading: 4단위, 6단위, 8단위 HTS Code를 의미
- 2 Stat Suffix: 통계 집계용 코드로서, Stat Suffix 열에 있는 숫자 클릭 시 CBP CROSS 사이트로 연동되어 CBP가 해당 HTS 코드로 발행한 사전심사 결정문 확인 가능
- 3 Article Description: 각 호의 용어(품목 설명)
- 4 Unit of Quantity: 수량 단위
- 5 RATES OF DUTY: 세율 정보는 1과 2로 구분하여 총 3개의 열로 구성됨

열	구분	설명
1-1열	General Rate of Duty	미국과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를 가진 국가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MFN 세율)
1-2열	Special Rate of Duty	FTA · 특혜관세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혜세율
2열	Column 2 Rate of Duty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없는 일부 국가산 물품에만 적용되는 세율(ex.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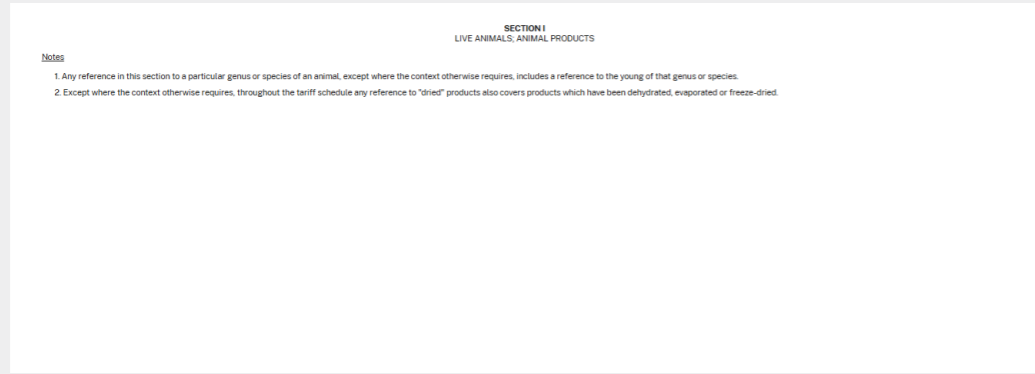
■ Chapter Note(류주) 화면

류(Chapter)의 주석을 보여주는 화면

-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HS 체계상 류 주석 외에도, 미국 고유의 주석인 Additional U.S. Notes도 함께 확인 가능

■ Section Notes(부주) 화면

Section(부)의 주석을 보여주는 화면



참고 - 미국의 품목분류 제도

■ 품목분류 개요

- 미국의 수입물품 품목분류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HTSUS)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를 기초로 하나, 미국의 관세행정, 통계작성, 통상정책 집행 필요에 맞추어 국내 세분류를 추가한 구조
- USITC가 HTSUS를 유지·공표하고, CBP가 수입통관 현장에서 이를 해석·집행

■ HTSUS 구조

- HTSUS는 국제 기준인 HS의 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 체계를 수용하여 6자리까지는 전 세계 통일 구조를 가지며, 이후 8자리 수준에서 국내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화하고, 마지막 두 자리는 통계신고 목적으로 활용
 - 처음 6자리(Chapter + Heading + Subheading) : 국제 HS Code
 - 다음 2자리(Subheading) : 미국 관세율이 적용되는 법적 기준
 - 그 다음 2자리(Statistical Suffix): 통계 집계용 코드

■ 품목분류 기준

- 품목분류를 위한 법적 기준은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이 활용되며, 이 외에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을 추가적으로 활용

-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GRI 순서에 따라 판단하며, GRI 1부터 6까지 순차적으로 판단

[HTSUS 품목분류 통칙 내용]

구분	주요 내용
GRI 1	• 품목분류는 우선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부, 류, 절의 표제는 참조용에 불과함
GRI 2	• 불완전품이나 미완성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 완성품으로 분류하며,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각 호에는 해당 재료 및 물질과 다른 재료 및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GRI 3	•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 혹은 기타 사유로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물품은 가장 구체적인 호에 우선 분류하며, 혼합물·복합물·세트 물품은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뒤 순서의 호로 분류함
GRI 4	• GRI 1~3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이 속하는 호로 분류함
GRI 5	•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경우 특정 물품을 담기 위해 알맞게 제조되고, 통상적으로 함께 제시되며,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경우 내용물과 함께 분류할 수 있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함
GRI 6	• 소호 단계 분류는 해당 소호의 용어와 소호 주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단계의 소호들 사이에서 GRI 원칙을 준용하여 판단함

- 추가 품목분류 원칙: 실무적으로 고유의 추가 해석 원칙인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을 두어 활용하고 있으며, 용도를 기준으로 주된 용도(Principle Use), 실제 용도(Actual Use) 기준을 활용
 - 주된 용도: 해당 물품이 속하는 종류(class or kind)의 미국 내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원칙이며, 개별 수입자의 주관적 사용계획만이 아니라 해당 물품 군의 통상적·객관적 용도가 중요함
 - 실제 용도: 물품을 수입 시점에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물품 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빙이 있어야 함

■ 미국 내 품목분류 운영 주체와 실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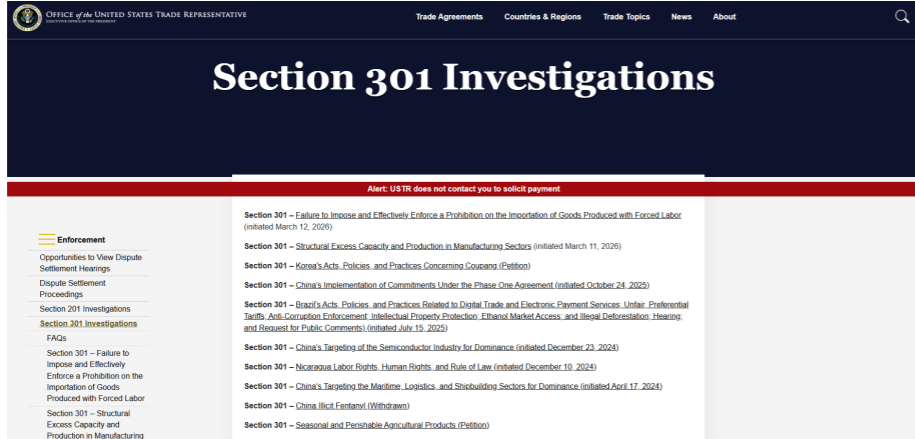
- 제도 운영 측면에서 USITC는 HTS를 유지·공표하고, CBP는 현장에서 품목분류, 신고심사, 결정문 발급,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 수입자는 19 U.S.C. § 1484(Entry of merchandise)에 따라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대해 합리적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수입 신고할 책임을 부담
 - CBP는 informed compliance와 shared responsibility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하고, CBP는 가이드라인, 사전심사 결정문, 기타 자료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구조임

- 품목분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CBP는 19 C.F.R. Part 177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된 결정문은 동일 사실관계의 동일 물품에 한하여 적용됨


■ 제98류 및 제99류 운영 방식

- 미국은 국제 HS에 따른 일반 분류 체계(제1~97류)와는 달리 특수하게 제98류, 제99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 감면 및 추가 관세 부과 요건 등을 규정함
 -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일반 분류와 특별 분류 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함
 - (제98류) 물품의 반입 경위나 법정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조건부 면세, 감면세율, 부분과세 또는 특례 적용 시 활용
 - (제99류) 제301조, 각종 긴급·정책성 추가관세, 기타 수입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활용

9) 미국 USTR 제301조 조사 관련 사이트

설명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 관련 중국 대상 제301조, 과잉생산,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등 제301조 조사 및 발동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경로	USTR 홈페이지 → Trade Topics → Enforcement → Section 301 Investigations
URL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utm_source=chatgpt.com
홈페이지	

10)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홈페이지

설명	미국 관세, 국제무역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결문, 소송 규칙, 전자소송 안내 등의 정보 제공
URL	https://www.cit.uscourts.gov/
홈페이지	

02 국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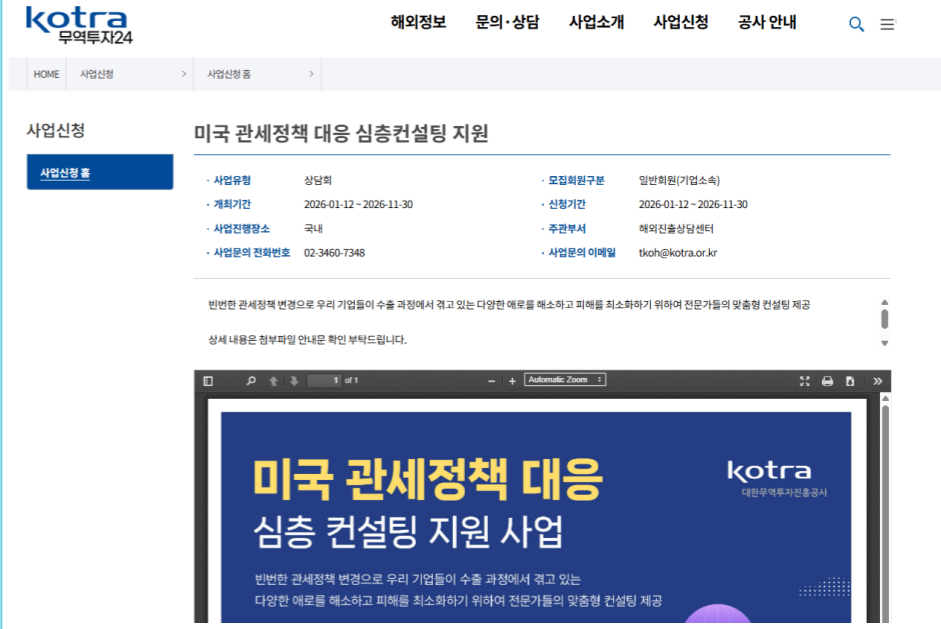
1) 관세청 YES FTA

설명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 자료(HTSUS 연계표 등) 열람 가능
URL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홈페이지	
기타 설명	통상변화대응지원-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탭을 통해 미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연계표 등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련 정보 제공

2)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정보 홈페이지

설명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등 정보 제공
URL	https://www.origin.or.kr/
홈페이지	

3) KOTRA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심층컨설팅 지원 사이트

설명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URL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6PC002&cpbizYn=N
홈페이지	



PART
IV

참고자료



1. 해외자료

CBP Ruling Program 안내 자료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us-customs-and-border-protection-rulings-program>

미국 원산지 제도 안내 자료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rules-origin>

미국 원산지 표시 안내 자료

<https://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markings-country-origin-us-imports>

미국 HTS 품목분류 안내 자료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tariff-classification>

HTS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https://www.usitc.gov/documents/hts/hts_external_user_guide.pdf

2. 국내자료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https://www.origin.or.kr/lay1/bbs/S1T106C108/A/40/view.do?article_seq=1493&cpage=2&rows=10&condition=&keyword=

CBP e-Ruling 신청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분석집-오리진 케이스-

<https://www.origin.or.kr/lay1/bbs/S1T106C107/F/41/list.do>